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93호

2017. 2. 2.(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7-224호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제2017-240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 고 시

제2017-29호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
제2017-30호 공동주택 관리·윤리에 관한 교육 고시	43
제2017-31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고시	43
제2017-32호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3
제2017-33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정 고시	61

◆ 공 고

제2017-21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62
제2017-214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62
제2017-215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63
제2017-21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64
제2017-22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65
제2017-226호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공고	67
제2017-233호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공청회 개최 공고	73
제2017-234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73
제2017-236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74
제2017-245호 제8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공고	75
제2017-253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88

◆ 구 고 시

제2017-14호 토지의 형질변경 사고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90
제2017-13호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구로구) ..	92

◆ 구 공 고

제2017-74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광진구)	96
제2017-1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구로구)	97
제2017-1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구로구)	100
제2017-1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영등포구)	104
제2017-1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영등포구)	108
제2017-9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안)열람공고 (동작구)	117

◆ 사업소고시

제2017-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19
제2017-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19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4호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소송수행업무 통합에 따른 부서별·담당자별 역할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소송수행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규칙의 체계를 보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송수행업무 통합에 따른 역할 변경 사항 반영

-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소송주관부서 변경, 소송지원부서 신설(안제3조)
 -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할 수 있음
-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응소 등 방침 수립(안제6조)
 - 예외적으로 제소 방침의 경우에는 업무주관관부서에서 방침 결정
-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지정 관련(안제7조)
 -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 소송주관부서 담당사무관 포함 각 2명이상
 - 소송보조자 : 소송지원부서 담당사무관 포함 2명이상
- 판결 확정 이후의 주요 조치사항 구분(안제16조, 제17조)
 - 소송주관부서 : 소송비용 추심 및 지급,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 등
 - 소송지원부서 : 판결금 등 추심 및 지급, 공탁금 회수 등

나. 소송수행 절차 등을 이해하기 쉽게 규칙의 체계 세분화

- 소송수행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규칙의 조·항 체계 조정
 - 소송 주관부서, 소송수행 방침결정, 수행자 등 및 대리인 지정, 역할지정, 소송결과 조치(승소, 패소), 중요소송 지정, 소송심의회 운영 등
- 현행 6개의 장별 규정을 10개의 장으로 구성 체계 세분화

- 총칙, 소송사건의 수행,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 판결 확정 이후의 조치, 직무 관련사건, 중재사건과 행정심판사건,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소송비용의 지급, 소송 심의회, 보칙

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선사항 반영

- 소송수행 중 중요사항 결정 시 소송심의회 심의 결정을 통하여 소송수행자의 부담 경감으로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함(안제32조제2항제2호)

라. 소송수행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 보완 등

- 판결금 등 지급 시 법률지원담당관 예산 활용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상향 조정(안제17조)
 - 판결금 지급의 시급성 등을 고려,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 소송수행 중 자료제출 지연 등 직무수행 규정 위반 시 조치(안제37조)
 -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패소범위 확대 또는 패소가 우려되거나, 패소한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
- 소송수행 유공자 승소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안제34조)
 - 소송업무 통합에 따라 소송보조자, 소송수행자들을 구분하여 지급
- 형사사건 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조정(안 별표1)
 - 착수금 일부 상향 및 승소사례금 규정 폐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맞게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법률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8층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전화: 2133-6705, FAX: 2133-0866, E-Mail: kp030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40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대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관된 자치법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의 ‘서울시립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하 ”조례“라 한다)” 내용 추가 (안 제1조)

나. 시립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을 규칙에 직접 명시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46, FAX: 02)2133-0822, E-mail: shubabing@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2011.09.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호(2013.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5호(2013.0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0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5.14)로 변경 결정된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 정	증 · 감	변 경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736,221.9	증)1,791.2	738,013.1	동작구 노량진동·대방동 일대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생활권의 자족적인 배후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차량주출입구 변경(만양로3길변)을 위한 구역계 확장부분 신규편입 및 구역 경계부 소규모필지 조정에 따른 면적 증가(1,191㎡)
-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내 미등록지번 누락면적 반영(575㎡)
- ※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구역 면적 변경(서울시고시 제2015-95호, 2015.4.9.) 누락면적 반영(25.2㎡)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9년
- 목표년도 : 2016년

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736,221.9	증) 1,791.2	738,013.1	100.0	-
획지	소 계	496,900.9	증) 2,435.3	499,336.2	67.6	-
	단독주택	29,673.0	-	29,673.0	4.0	-
	공동주택	303,314.0	증) 1,107.0	304,421.0	41.2	-
	복합시설	148,609.9	증) 99.3	148,709.2	20.1	-
	근린생활시설	7,907.0	-	7,907.0	1.1	-
	종교시설	7,397.0	증) 1,229.0	8,626.0	1.2	-
기반 시설	소 계	239,321.0	감) 644.1	238,676.9	32.4	-
	공원녹지	52,727.6	감) 2,828.0	49,899.6	6.8	-
	공공시설	17,274.0	감) 1,109.0	16,165.0	2.2	-
	공공공지	10,353.4	-	10,353.4	1.4	-
	학 교	59,407.0	-	59,407.0	8.0	-
	도 로	99,559.0	증) 3,292.9	102,851.9	14.0	-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구역계 확장부분 신규 편입 및 구역경계부 소규모 필지 조정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내 미등록지번 누락면적 반영(575㎡)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경계필지 및 무등록지번 편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구역 면적 변경(서울시고시 제2015-95호, 2015.4.9.) 누락면적 반영(25.2㎡)

※ 기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 2016.4.14.) 시 기반시설 면적 산정 착오 정정(239,321.5㎡→239,321.0㎡)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구 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9,397	9,700	25,196	26,013	
기시행구역		475	475	1,282	1,282	
준치지역		1,471	1,471	3,796	3,796	
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계	7,451	7,754	20,118	20,935	
	40㎡ 이하	584	635	1,577	1,714	
	40㎡ ~ 60㎡	2,159	2,600	5,829	7,020	
	60㎡ ~ 85㎡	3,354	3,394	9,056	9,164	
	85㎡ 초과	1,354	1,125	3,656	3,037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명 칭	개 소	인구수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교육 시설	계	2	59,407	-	59,407	
	초등학교	1	12,061	-	12,061	
	고등학교	1	47,346	-	47,346	
공공 청사	계	4	6,747	감) 749	5,998	
	치안센터	1	1,749	감) 1,349	400	변경
	주민센터	1	4,998	감) 2,027	2,971	변경
	일자리+복지센터	1	-	증) 2,027	2,027	신설
	도시재생지원센터	1	-	증) 600	600	신설

※ 기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 2016.4.14.) 시 고등학교(교육시설) 면적 산정 착오 정정(47,390㎡→47,346㎡)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 분	명 칭	개 소			인구수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 정	증 · 감	변 경	
공원 시설	노량진 근린공원	1	-	1	52,727.6	감) 2,828	49,899.6	생태공원, 중앙공원, 송학공원, 노들공원, 대방공원, (유한)공원
공공 공지	공공공지	2	-	2	10,353.4	-	10,353.4	

5) 교통계획(변경)

-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Ⅱ.7 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비 고
기정 변경	1	뉴타운	노량진1동	232-19	7.3 7.3	190%	5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3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		노량진2동	278-2	13.1	190%	5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3		노량진2동	294-220	7.4	210%	5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2		노량진2동	312-75	1.6	190%	5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변경	23		노량진1동	227-121 227-5	3.9 4.1	190% 210%	6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4		노량진2동	270-3	3.7	190%	5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5		대방동	13-31	3.3	195%	6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변경	26		대방동	44-1 23-61	5.7 5.7	190% 210%	60%	3	주택재개발사업	전면개발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 노량진4,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대표지번 변경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촉진사업의 종류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계			736,221.9	증) 1,791.2	738,013.1	－	
촉진 구역	소계 (8개 구역)		461,465.5	증) 831.0	462,296.5	－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131,184.0	－	131,184.0	주택재개발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16,207.0	－	16,207.0	주택재개발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73,300.0	감) 147.0	73,153.0	주택재개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27-5번지 일대	39,384.0	증) 1,369.0	40,753.0	주택재개발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	36,918.0	－	36,918.0	주택재개발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	73,892.0	－	73,892.0	주택재개발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대방동 13-31번지 일대	33,154.5	－	33,154.5	주택재개발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대방동 23-61번지 일대	57,426.0	감) 391.0	57,035.0	주택재개발	
준치 구역	소계 (5개 구역)		147,192.0	증) 224.0	147,416.0	－	
	노량진9준치관리구역	노량진동 84-11번지 일대	18,564.0	－	18,564.0	－	
	노량진10준치관리구역	대방동 49-2번지 일대	57,050.0	증) 255.0	57,305.0	－	
	노량진11준치관리구역	노량진동 84-18번지 일대	21,415.0	－	21,415.0	－	
	노량진12준치관리구역	노량진동 310-95번지 일대	15,608.0	감) 31.0	15,577.0	－	※
	노량진13준치관리구역	노량진동 221-59번지 일대	34,555.0	－	34,555.0	－	
준치시설		－	102,725.0	증) 711.0	103,436.0	－	
기시행 구역	노량진1재개발구역	노량진동 122-37번지 일대	17,539.6	－	17,539.6	(주택재개발)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구역	노량진동 307-9번지 일대	7,299.8	증) 25.2	7,325.0	(시장정비사업)	※

※ 준치관리10,11,12,13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서울시고시. 제2013-291호, 2013. 9. 5)

※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구역 면적 변경(서울시고시 제2015-95호, 2015.4.9.) 누락면적 반영(25.2㎡)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 노량진1~2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노량진3 재정비촉진구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 감	변 경	
주거지역	계	73,300	감) 147	73,153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245	감) 23	3,222	4.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6,574	증) 95	16,669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	53,481	감) 219	53,262	73.0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과의 구역계 조정에 따라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내 용도지역 면적 변경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 감	변 경	
주거지역	계	39,384	증) 1,369	40,753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343	증) 23	2,366	5.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937	증) 1,106	5,043	12.4
	제2종일반주거지역	33,104	-	33,104	81.2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40	240	0.6

○ 노량진5~7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 감	변 경	
주거지역	계	57,426	감) 391	57,03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996	감) 1,996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916	감) 435	3,481	5.9
	제2종일반주거지역	51,190	증) 2,364	53,554	94.1
	제3종일반주거지역	324	감) 324	-	-

10) 용도지구 변경계획(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주용도	상한용적률 (%)	건폐율 (%)	높이계획	
						평균층수/최고층수	최고높이(m)
재 정 비 촉 진 구 역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주거복합/공동주택	250%이하	50%이하	- / 30층이하	110m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거복합/공동주택	414%이하	50%이하	- / 29층이하	107m
	노량진3 재정비촉진구역		주거복합/공동주택	250%이하	50%이하	- / 30층이하	110m
	노량진4 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공동주택	237%이하	60%이하	19층 / 30층이하	90m
		변경		260%이하		20층 / 30층이하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250%이하	50%이하	- / 30층이하	90m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300%이하	50%이하	- / 28층이하	90m
	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240%이하	60%이하	18층 / 30층이하	90m
	노량진8 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공동주택	230%이하	60%이하	16층 / 30층이하	90m
		변경		300%이하		22층 / 30층이하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변경)

구 역 명		구역 면적 (㎡)	기반시설면적(㎡)					순부담률 (%)
			계	계획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면적 (㎡)	
합 계	기정	461,465.5	130,465.5	40,086.5	21,476.0	—	68,903.0	14.93
	변경	462,296.5	129,402.5	40,555.8	20,586.4	—	68,260.3	14.77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131,184	30,629	3,681	5,664	—	21,284	16.22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16,207	4,099	215	1,038	—	2,846	17.56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기정	73,300	29,000	14,415	5,046	—	9,539	13.01
	변경	73,153	28,853				9,392	12.84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기정	39,384	9,414	1,505	2,355	—	5,554	14.10
	변경	40,753	10,008	2,095	2,100		5,813	14.26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36,918	8,391	467	1,034	—	6,890	18.66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73,892	24,451	12,285	1,442	—	10,724	14.51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33,154.5	10,676.5	5,442.5	1,061	—	4,173	12.59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기정	57,426	13,805	2,076	3,836	—	7,893	13.74
	변경	57,035	12,295	1,955.3	3,201.4		7,138.3	12.52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과의 구역계 조정에 따른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기반시설면적 변경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순부담면적은 건축물(일자리+복지센터 2,400㎡)환산 기부채납면적 반영(984㎡)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순부담면적은 건축물(도시재생지원센터 1,135㎡)환산 기부채납면적 반영(399㎡)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역명		계 획 세대수	일반주택 (세대)	임대주택(세대)					부분임대
				소계	40㎡이하	40~50㎡	50~60㎡	60~85㎡	
합 계	기정	7,451	6,116	1,335	558	517	239	21	22
	변경	7,754	6,370	1,384	574	539	250	21	22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1,997	1,657	340	162	140	38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421	315	106	—	—	85	21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1,012	838	174	80	74	20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기정	675	559	116	54	50	12	—	
	변경	860	713	147	60	64	23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623	515	108	45	48	15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1,283	1,040	243	103	104	36	—	22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551	457	94	44	39	11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기정	889	735	154	70	62	22	—	
	변경	1,007	835	172	80	70	22	—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6) 폐기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7) 방재계획(변경없음)

18) 정보화계획(변경없음)

19) 에너지순환계획(변경없음)

20) 특성화계획(변경없음)

21)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 구역별 정비계획

구역명		구역면적 (㎡)	대지면적 (㎡)	기준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폐율 (%)	계획 용적률(%)	평균층수/ 최고층수	비고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131,184	100,555.0	190	250	22.49	244.21	-/30이하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16,207.0	12,108.0	190	414	43.59	397.94	-/29이하	-
노량진3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73,300.0	44,300.0	190	250	24.34	244.03	-/30이하	-
	변경	73,153.0							
노량진4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39,384.0	29,970.0	190	237	22.42	235.77	19/30이하	역세권 7%완화
	변경	40,753.0	31,729.0	210	260	23.55	253.03	20/30이하	기준용적률 20%완화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36,918.0	28,527.0	190	250	22.42	249.65	-/30이하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73,892.0	49,352.0	210	300	18.90	260.02	-/28이하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33,154.5	22,478.0	195	240	23.67	237.44	18/30이하	기준용적률 5%완화
노량진8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57,426.0	43,621.0	190	230	19.95	225.17	16/30이하	기준용적률 20%완화
	변경	57,035.0	42,106.0	210	300	26.06	227.59	22/30이하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과의 구역계 조정에 따른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면적 변경

○ 구역별 주택규모별 배분계획(변경)

구분		합계	분양(부분임대)				임대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계	기정	7,451 (22)	6,116 (22)	1,429	3,333	1,354	1,335	558	517	239	21
	변경	7,754 (22)	6,370 (22)	1,872	3,373	1,125	1,384	574	539	250	
노량진1촉진구역		1,997	1,657	269	812	576	340	162	140	38	-
노량진2촉진구역		421	315	99	216	-	106	-	-	85	21
노량진3촉진구역		1,012	838	198	443	197	174	80	74	20	-
노량진4촉진구역	기정	675	559	102	406	51	116	54	50	12	-
	변경	860	713	352	361	-	147	60	64	23	-
노량진5촉진구역		623	515	80	250	185	108	45	48	15	-
노량진6촉진구역		1,283 (22)	1,040 (22)	341	601	98 (22)	243	103	104	36	-
노량진7촉진구역		551	457	208	230	19	94	44	39	11	-
노량진8촉진구역	기정	889	735	132	375	228	154	70	62	22	-
	변경	1,007	835	325	460	50	172	80	70	22	-

※ ()는 부분임대 세대임

가)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 나)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다) 노량진3 재정비촉진구역(변경)

※ 금회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사항은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과의 구역계 조정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 사항임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73,330.0	감) 147.0	73,153.0	-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73,300	감) 147	73,153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29,000	감) 147	28,853	39.4	－
	공 원	3,242	감) 23	3,219	4.4	－
	도 로	13,697	감) 212	13,485	18.4	
	학 교	12,061	－	12,061	16.5	－
	공공시설	－	증) 88	88	0.1	－
택 지 (획 지)	소 계	44,300	－	44,300	60.6	－
	3-1	6,659	－	6,659	9.1	－
	3-2	8,912	－	8,912	12.2	－
	3-3	9,420	－	9,420	12.9	－
	3-4	19,309	－	19,309	26.4	－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 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류	18	25~40	주간선 도로	6,490	노량진역전	구로동	일반도로	장승배기길
기정	중로	2류	6	15	집산 도로	142	노량진동 51	노량진동 84-9	일반도로	
기정	중로	2류	8	15	집산 도로	240 (100)	노량진동 309-39	노량진동 225-5	일반도로	
변경	중로	3류	A	12~15	집산 도로	240 (100)	노량진동 309-39	노량진동 225-5	일반도로	도로폭원 변경
기정	중로	3류	35	12	국지 도로	95	노량진동 232-143	노량진동 232-255	일반도로	
기정	중로	3류	36	12	국지 도로	250	노량진동 232-188	노량진동 84-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류	4	10	국지 도로	120	노량진동 225-32	노량진동 225-15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류	4	8	국지 도로	275	노량진동 120-6	노량진동 225-29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류	6	6~15	특수 도로	238	노량진동 229-21	노량진동 225-196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소로	3류	6	6~15	국지 도로	238	노량진동 229-21	노량진동 225-282	보행자우선도로	도로기능 및 선형 변경

주) ()는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임

○ 공 원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④	노량진근린공원 (중앙공원)	근린공원	대방동 44-29번지 일대	14,683 (2,007)	감) 2,828 (감) 23)	11,855 (1,984)	
기정	⑥	노량진근린공원 (노들공원)	근린공원	대방동 119-171번지 일대	1,235	-	1,235	

주) ()는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 학 교 (변경없음)

○ 공공청사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③	노량진1동주민센터 → 동작구 일자리+복지센터	노량진동 225-171번지 일대	2,027 (-)	- (증) 88)	2,027 (88)	

주) ()는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노량진3 재정비	73,300	-	-	동작구 노량진동 232-19번지일대	337	-	-	337	-	-
변경	촉진구역	73,153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노량진3 재정비 촉진구역	73,300	3-1	6,659	동작구노량진동 232-107일대	주거 복합	23.34	244.03	110이하	-	30층 이하		
			3-2	8,912	동작구노량진동 232-146일대								
변경		73,153	3-3	9,420	동작구노량진동 231-4일대								
			3-4	19,309	동작구노량진동 232-270일대	공동 주택			90이하	-	25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구분		계		임대(㎡)				분양(㎡)			
						소계	40이하	40~50	50~60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기정	주택 (호)	1,012	174	80	74	20	838	198	443	197	
비율 (%)	100.00		17.19	7.91	7.31	1.97	82.81	19.56	43.78	19.4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장승배기길 변 : 건축한계선 7.5m~7.8m ●중앙공원 변 : 건축한계선 3m, 5m ●15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기타 건축선은 건축법 및 주택법등의 관계법규에 따름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동작구 노량진동 227-5번지 일대	39,384.0	증) 1,369.0	40,753.0	-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차량주출입구 변경(만양로3길변)을 위한 구역계 확장부분 신규편입 및 구역 경계부 소규모필지 조정
에 따른 면적 변경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39,384	증) 1,369	40,753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9,414	감) 390	9,024	22.1	－
	도 로	5,043	증) 507	5,550	13.6	
	공 원	2,344	감) 809	1,535	3.7	－
	공공시설	2,027	감) 88	1,939	4.8	－
택 지 (획 지)	소 계	29,970	증) 1,759	31,729	77.9	－
	4-1	29,970	증) 1,759	31,729	77.9	－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 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류	1	15	국지 도로	944	노량진동 310-154	노량진동 215-334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60호 (1993.3.12.)
변경	중로	2류	1	15~20	국지 도로	944 (163)	노량진동 310-154	노량진동 215-334	일반도로	도로선형 및 폭원 변경
기정	중로	2류	8	15	집산 도로	240 (140)	노량진동 309-39	노량진동 225-5	일반도로	
변경	중로	3류	A	12~15	집산 도로	240 (140)	노량진동 309-39	노량진동 225-5	일반도로	도로 폭원 변경
기정	소로	1류	4	10	국지 도로	120	노량진동 225-32	노량진동 225-158	일반도로	
기정	소로	2류	4	8	국지 도로	275 (95)	노량진동 120-6	노량진동 225-29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류	6	8	국지 도로	143	노량진동 229-116	노량진동 309-16	일반도로	
변경	소로	2류	6	8	국지 도로	143	노량진동 229-116	노량진동 309-16	일반도로	도로 선형 변경
기정	소로	3류	6	6~15	특수 도로	238	노량진동 229-21	노량진동 225-196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소로	3류	6	6~15	국지 도로	238	노량진동 229-21	노량진동 225-196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기능 및 선형 변경

주) ()는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임

○ 공 원(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④	노량진근린공원 (중앙공원)	근린공원	대방동 44-29번지 일대	14,683 (2,344)	감) 2,828 (감) 809)	11,855 (1,535)	

주) ()는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 기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 2009.12.10.) 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원 면적 산정 착오 정정(2,342㎡→ 2,344㎡)

○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③	노량진1동주민센터 → 동작구 일자리+복지센터	노량진동 225-171번지 일대	2,027 (2,027)	- (감) 88)	2,027 (1,939)	

주) ()는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공동이용시설	관리사무소	노량진4 재정비 촉진구역내	300	감) 100	200	-
	경 로 당		100	증) 130	230	-
	보육시설		150	증) 190	340	어린이집
	문 고		50	증) 130	180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900	감) 100	800	-
	주민운동시설		450	감) 100	350	-
	주민공동시설		1,200	감) 400	800	-

※ 재개발사업 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라)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노량진4 재정비	39,384	-	-	동작구 노량진동 227-5번지일대	195	-	-	195	-	-
변경	촉진구역	40,753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노량진4 재정비 촉진구역	39,384	4-1	29,970	동작구 노량진동 227-5번지일대	공동 주택	22.42	235.77	90이하	19층 이하	30층 이하	
변경		40,753		31,729			23.55	253.03		20층 이하		
기정		39,384	4-2	2,027	동작구 노량진동 225-171번지일대	공공 청사	60이하	200 이하	-	-	7층 이하	
변경		40,753		2,027 (1,939)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계	임대(㎡)				분양(㎡)			
					소계	40이하	40~50	50~60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기정	주택 (호)	675	116	54	50	12	559	102	406	51
			비율 (%)	100.00	17.19	8.00	7.41	1.78	82.81	15.11	60.15	7.55
		변경	주택 (호)	860	147	60	64	23	713	352	361	-
비율 (%)	100.00		17.09	6.98	7.44	2.67	82.91	40.93	41.98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중앙공원 변 : 건축한계선 3m ●15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기타 건축선은 건축법 및 주택법등의 관계법규에 따름										
대지내 통로 계획 (공공보행통로)		●폭원3m 이상으로 설치하되 24시간 개방할 것 ●기타 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건축지침도 및 시행지침에 따름										

※ ()는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	규모별 세대수				비고
					합계	40㎡이하	50㎡~60㎡	60~85㎡	
기정	노량진4구역	29,970	-	-	116	54	50	12	-
변경		31,729	-	-	147	60	64	23	

마)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 사) 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아)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 일대	57,426	감) 391	57,035	-

※ 지적선에 따른 구역경계필지 조정 및 미등록지번 누락면적 반영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57,426	감) 391	57,035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13,805	감) 257	13,548	23.8	－
	도 로	8,448	증) 2,848	11,296	19.8	－
	공 원	1,996	감) 1,996	－	0.0	근린공원 → 획지
	학 교	799	－	799	1.4	－
	공공시설	2,562	감) 1,109	1,453	2.6	치안센터, KT, 공공청사
택 지 (획 지)	소 계	43,621	감) 134	43,487	76.2	－
	8-1	43,621	감) 1,515	42,106	73.8	－
	8-2	－	증) 1,381	1,381	2.4	종교시설, 현황도로(공동주택) 존치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 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류	5	15	집산 도로	745 (268)	노량진동 240-79	대방동 23-58	일반도로	
변경	중로	2류	5	15	집산 도로	745 (268)	노량진동 240-79	대방동 23-58	일반도로	도로선형 조정
기정	중로	2류	9	15	특수 도로	640 (350)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 전용도로	
변경	중로	2류	9	15	국지 도로	640 (350)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 우선도로	사용형태 변경
기정	소로	3류	B	6	국지 도로	20	대방동 32-1	대방동 68-87	일반도로	
변경	소로	3류	B	6	국지 도로	34	대방동 32-1	대방동 68-87	일반도로	구역경계 조정
폐지	소로	3류	11	6~30	특수 도로	30	대방동 20-10	대방동 44-272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경계 조정
신설	소로	3류	12	6~8	국지 도로	238	대방동 44-200	대방동 43-2	일반도로	교회 진입도로

주) ()는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임

○ 공 원(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④	노량진근린공원 (중앙공원)	근린공원	대방동 44-29번지 일대	14,683 (1,996)	감) 2,828 (감) 1,996)	11,855 (-)	

주) ()는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 학 교(변경없음)

○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①	공공청사	치안센터	대방동 45-4일대	1,749	감) 1,349	400	
신설	④	공공청사	도시재생 지원센터	대방동 45-4일대	-	증) 600	600	

(다)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공동이용시설	관리사무소	노량진8 재정비 촉진구역내	90.00	-	90.00	
	근린생활시설		1,800.00	감) 266.91	1,533.09	
	주민공동이용시설		150.00	증) 1,350.00	1,500.00	
	경로당		150.00	증) 300.00	450.00	
	어린이놀이터		1,200.00	증) 65.15	1,265.15	
	주민운동시설		700.00	증) 81.20	781.20	
	문고(작은도서관)		100.00	증) 143.60	243.60	
	보육시설		220.00	증) 476.00	696.00	

※ 재개발사업 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노량진8 재정비 촉진구역	57,426	8	-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일대	278	-	-	278	-	-
변경		57,035	8	-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일대	277	1	2	275	-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노량진8 재정비 촉진구역	57,426	8-1	43,621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일대	공동 주택	19.9	225.1	63	16층 이하	21층 이하	
변경	노량진8 재정비 촉진구역	57,035	8-1	42,106	동작구 대방동 23-61번지일대	공동 주택	26.1	227.6	88	22층 이하	29층 이하	
			8-2	1,381	동작구 대방동 44-1번지일대	종교 시설, 도로	건축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계	임대(㎡)				분양(㎡)			
					소계	40이하	40~50	50~60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기정	889	154	70	62	22	735	132	375	228
			변경	1,007	172	80	70	22	835	325	460	5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15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6m ● 보행자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기타 건축선은 건축법 및 주택법등의 관계법규에 따름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	규모별 세대수				비고
					합계	40㎡이하	50㎡~60㎡	60~85㎡	
기정	노량진8구역	43,621	3	-	154	70	62	22	-
변경		42,106	3	-	172	80	70	22	

2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감	변 경	
계			736,221.9	증) 1,791.2	738,013.1	100.0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720,685.9	증) 1,791.2	722,477.1	97.9
		제1종일반주거지역	51,786.6	감) 1,996.0	49,790.6	6.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69,909.3	증) 1,664.8	171,574.1	23.3
		제2종일반주거지역	124,745.6	증) 2,364.0	127,109.6	17.2
		제3종일반주거지역	374,244.4	감) 241.6	374,002.8	50.7
	준주거지역		12,108.0		12,108.0	1.6
일반상업지역			3,428.0	—	3,428.0	0.5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 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류	18	25~40	주간선도로	6,490 (730)	노량진역전	구로동	일반도로	상도동길	건설부고시 제177호 1962.12.08	장승배기길
기정	중로	2류	6	15	집산도로	142	노량진동 51	노량진동 84-9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2류	7	15	집산도로	710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79-5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2류	8	15	집산도로	240	노량진동 309-39	노량진동 225-5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변경	중로	3류	A	12~15	집산도로	240	노량진동 309-39	노량진동 225-5	일반도로			도로폭원 변경
기정	중로	3류	101	12		200	노량진동 27-2	노량진동 87-49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 1978.04.25	
기정	중로	3류	33	12	국지도로	390	노량진동 306-10	노량진동 246-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류	34	12	국지도로	65	노량진동 233-5	노량진동 248-14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5	12	국지도로	95	노량진동 232-143	노량진동 232-255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6	12	국지도로	250	노량진동 232-188	노량진동 84-1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중로	3류	37	12	국지도로	188	노량진동 315-135	노량진동 313-72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소로	1류	4	10	국지도로	120	노량진동 225-32	노량진동 225-158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기정	소로	2류	4	8	국지도로	275	노량진동 120-6	노량진동 225-294	일반도로		동작구고시 제2000-45호 2000.10.26	
기정	소로	2류	C	8	국지도로	59	노량진동 271-32	노량진동 289-42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 1978.04.25	
기정	소로	2류	D	8	국지도로	61	노량진동 256-51	노량진동 294-63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74호 1978.4.25	
기정	소로	2류	6	8	국지도로	143	노량진동 229-116	노량진동 309-16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변경	소로	2류	6	8	국지도로	143	노량진동 229-116	노량진동 309-16	일반도로			도로선형 변경
기정	소로	3류	3	6		71	노량진동 310-150	노량진동 310-46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제 60호 1993.03.12	
기정	소로	3류	A	6		130	대방동 39-1	대방동 68-7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20호 1976.06.02	
기정	소로	3류	6	6 ~ 15	특수도로	238	노량진동 229-21	노량진동 225-196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1993.03.12	
변경	소로	3류	6	6 ~ 15	국지도로	238	노량진동 229-21	노량진동 225-196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기능 및 선형변경
기정	소로	3류	7	4		93	노량진동 219-37	노량진동 215-87			서울특별시고시 제60호 1993.03.12	
기정	소로	3류	C	4		242	노량진동 83-15	노량진동 92-2				사도
기정	중로	2류	5	15	집산도로	745	노량진동240-79	대방동23-58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변경	중로	2류	5	15	집산도로	745	노량진동240-79	대방동23-58	일반도로			도로선형 조정
기정	중로	2류	9	15	특수도로	640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변경	중로	2류	9	15	국지도로	640	상도동 453	대방동 45-38	보행자 우선도로			사용형태 변경
기정	중로	2류	25	15~20	집산도로	1,325 (292)	대방동49-6	상도동366-5	일반도로		종북부고시 제722호 1936.12.26	등용길
기정	소로	3류	B	6	국지도로	20	대방동 32-1	대방동 68-87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제 264호 1981.07.11	
변경	소로	3류	B	6	국지도로	34	대방동 32-1	대방동 68-87	일반도로			구역경계 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류	10	5~6	특수도로	25	대방동11-25	대방동11-8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10호 2010.06.03	
폐지	소로	3류	11	6~30	특수도로	30	대방동20-10	대방동44-272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10호 2010.06.03	구역경계 조정
기정	중로	2류	1	15	국지도로	944	노량진동 310-154	노량진동 215-334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60호 1993.03.12	만양로3길
변경	중로	2류	1	15~20	국지도로	944 (163)	노량진동 310-154	노량진동 215-334	일반도로			도로선형 및 폭원 변경
신설	소로	3류	12	6~8	국지도로	238	대방동 44-200	대방동43-2	일반도로			교회 진입도로

※ ()안은 지구 내 연장

(2) 공간시설(변경)

☐ 공 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	노량진근린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225-291일대	416,031 (52,105.6)	감) 2,828 (감) 2,828)	413,203 (49,277.6)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 1940.03.12	()는 지구 내
지 구 내	①	노량진근린공원 (대방공원)	근린공원	대방동 226-7번지	6,881.6	-	6,881.6	-	-
	②	노량진근린공원 (송학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225-291번지일대	11,080	-	11,080	-	-
	③	노량진근린공원 (중앙공원)	근린공원	대방동 44-29번지일대	14,683 (3,242) (2,344) (1,996)	감) 2,828 (감) 23) (감) 809) (감) 1,996)	11,855 (3,219) (1,535) -	-	- (3구역) (4구역) (8구역)
	④	노량진근린공원 (생태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252-3번지일대	18,226	-	18,226	-	-
	⑤	노량진근린공원 (노들공원)	근린공원	노량진동 119-171번지일대	1,235	-	1,235	-	-

☐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①	공공공지	노량진동 329-12번지일대	178	-	178	동작구고시 제2003-94호 (2003.8.30)	-
기정	②	공공공지	노량진동 294-432번지일대	10,175.4	-	10,175.4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

☐ 공공청사(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공공청사	치안센터	대방동 45-4일대	1,749	-	-	서울특별시고시 제210호 (2010.6.3)	-
변경	①	공공청사	치안센터		-	감) 1,349	400	-	-
기정	②	공공청사	노량진2동 주민센터	노량진동 294-41일대	2,971	-	2,971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
기정	③	공공청사	노량진1동 주민센터	노량진동 225-171일대	2,027	-	2,027	서울특별시고시 제503호 (2009.12.10)	-
변경	③	공공청사	동작구 일자리+복지센터					-	-
신설	④	공공청사	도시재생 지원센터	대방동 45-4일대	-	증) 600	600	-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학 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영화초교, 영등포 중고교	학교	대방동 13-2번지일대	47,346	-	47,346	서울시고시 제178호 (1978.4.26)	-
기정	②	노량진초교	학교	노량진동 237번지일대	12,061	-	12,061	서울시고시 제399호 (1978.8.08)	-

☐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	노량진동 224-6	159	-	159	동작구고시 제2008-33호 (2008.7.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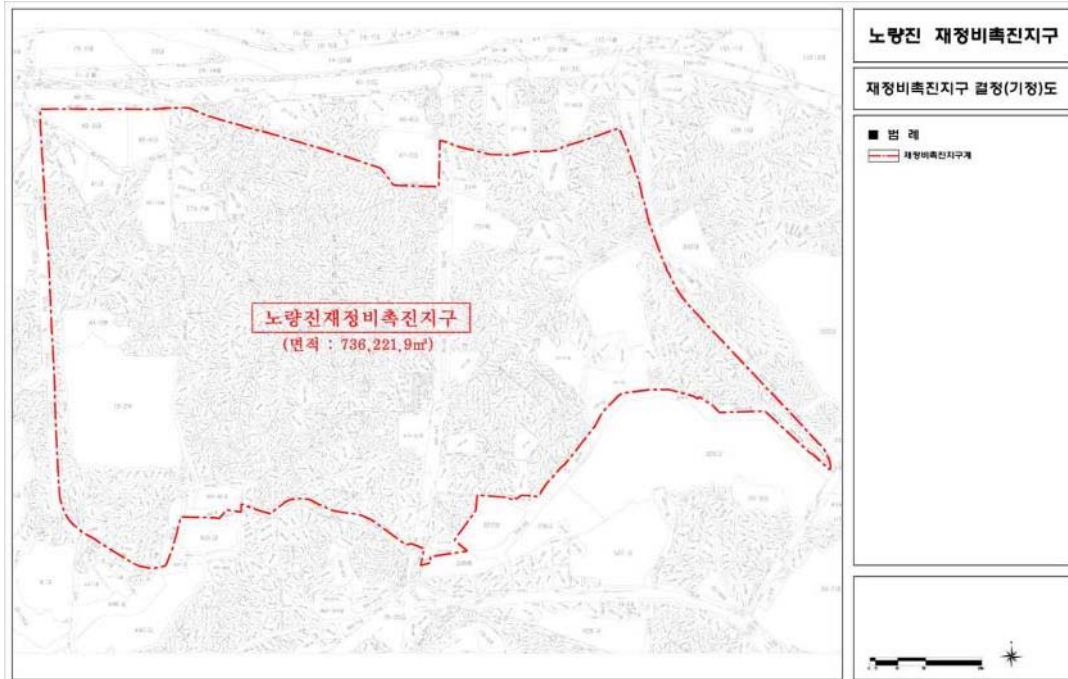
라.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명시

마.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및 동작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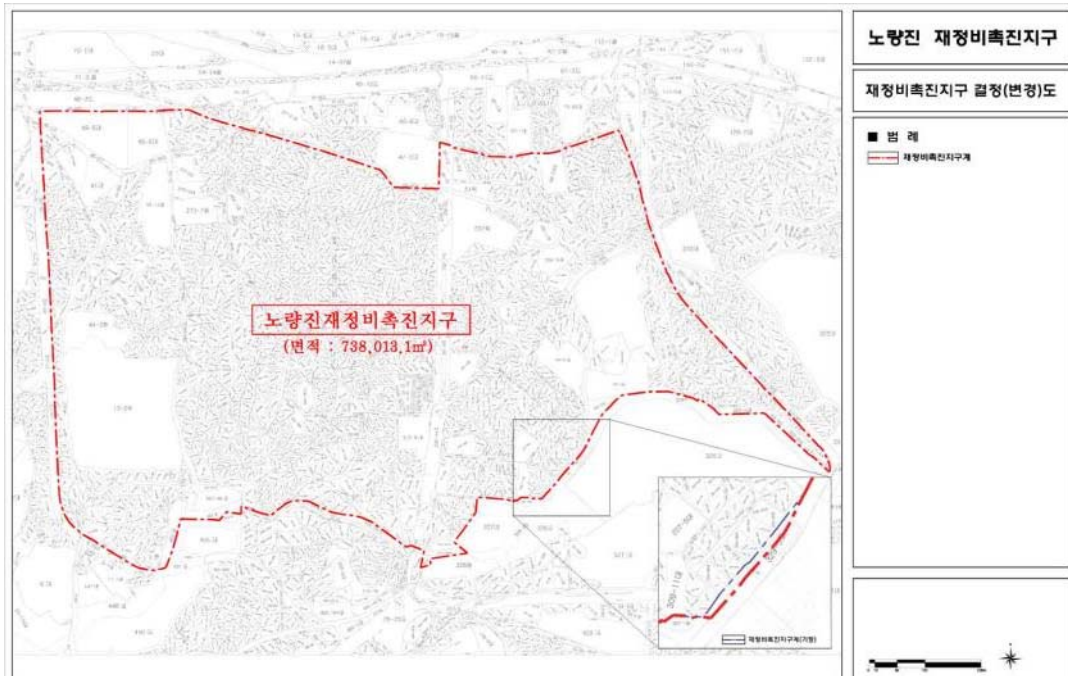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바. 시민의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3) 및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02-820-9813, 926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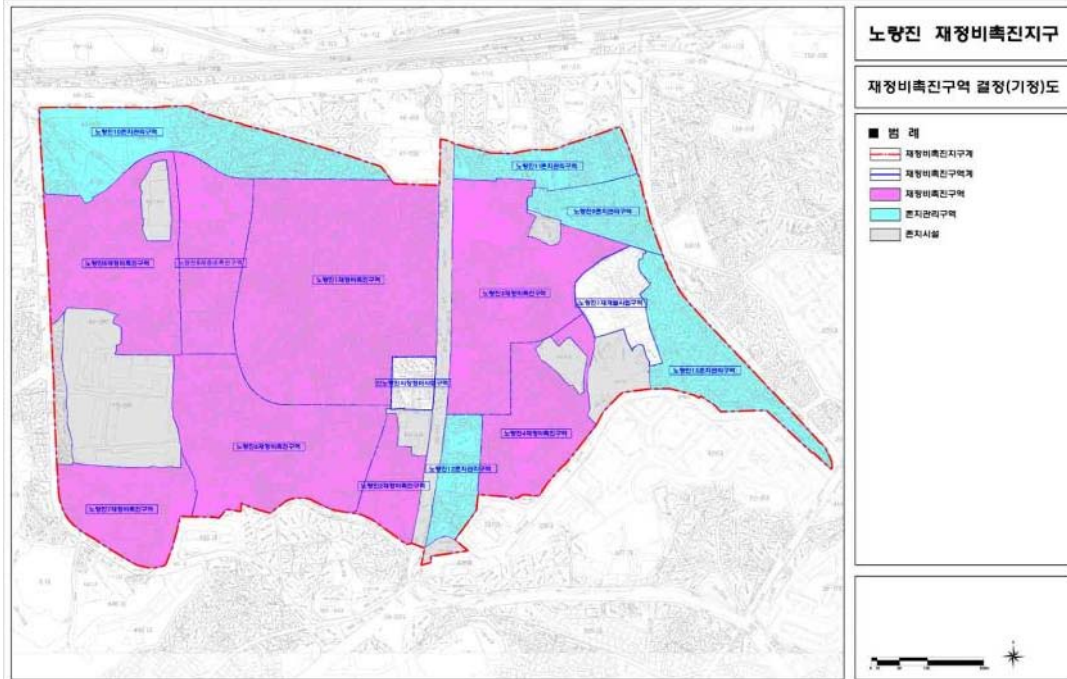
■ 정비촉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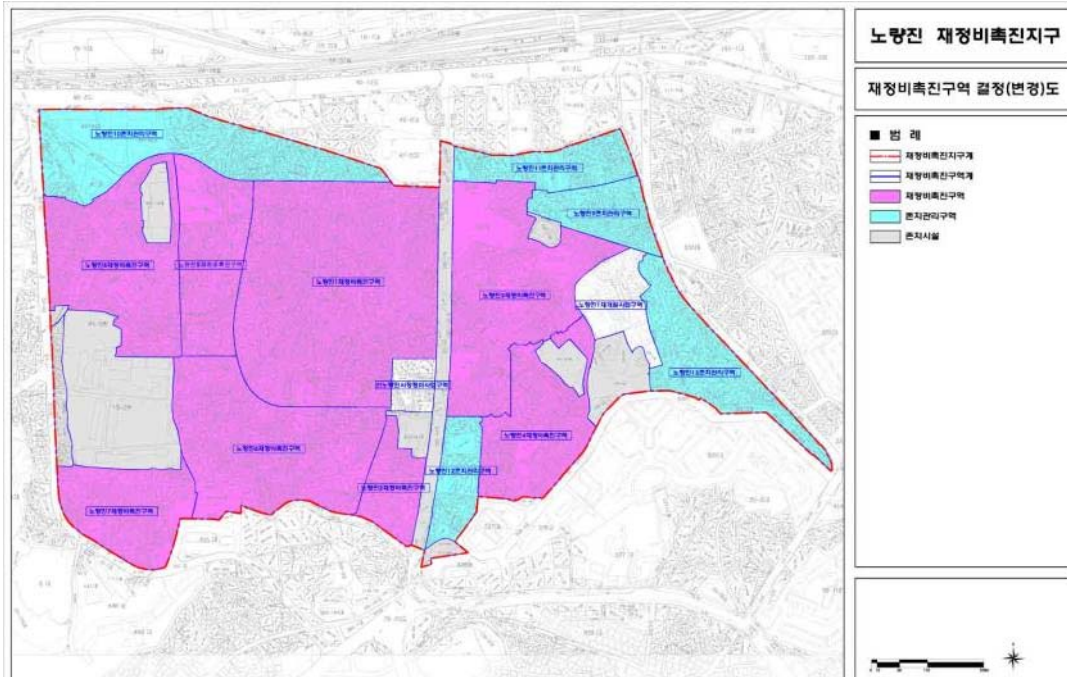
■ 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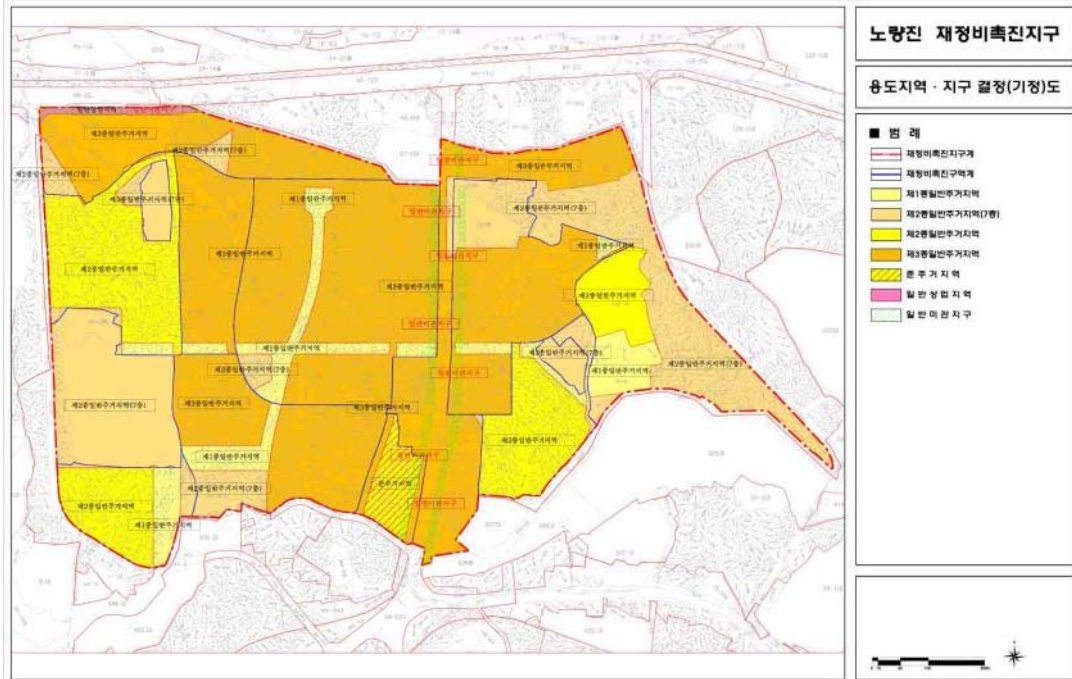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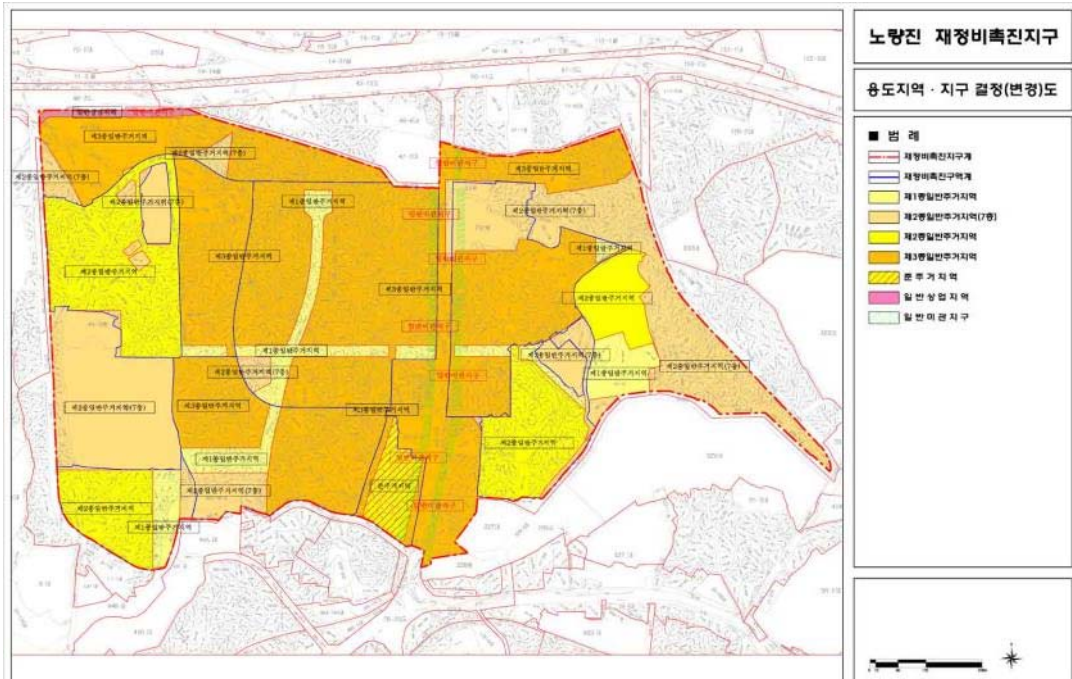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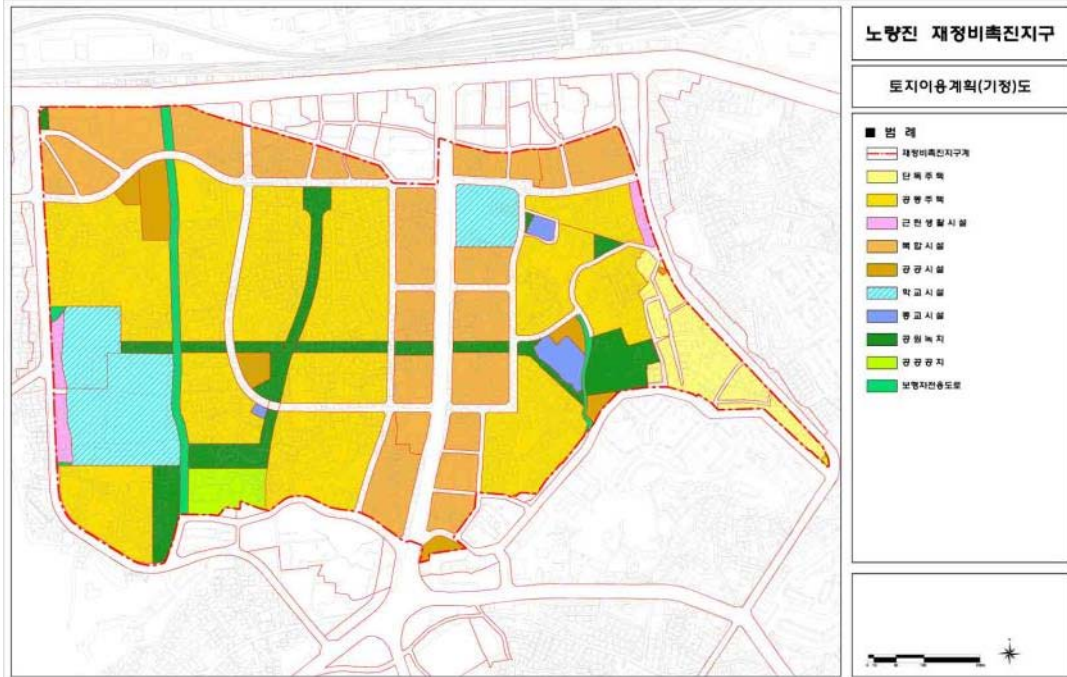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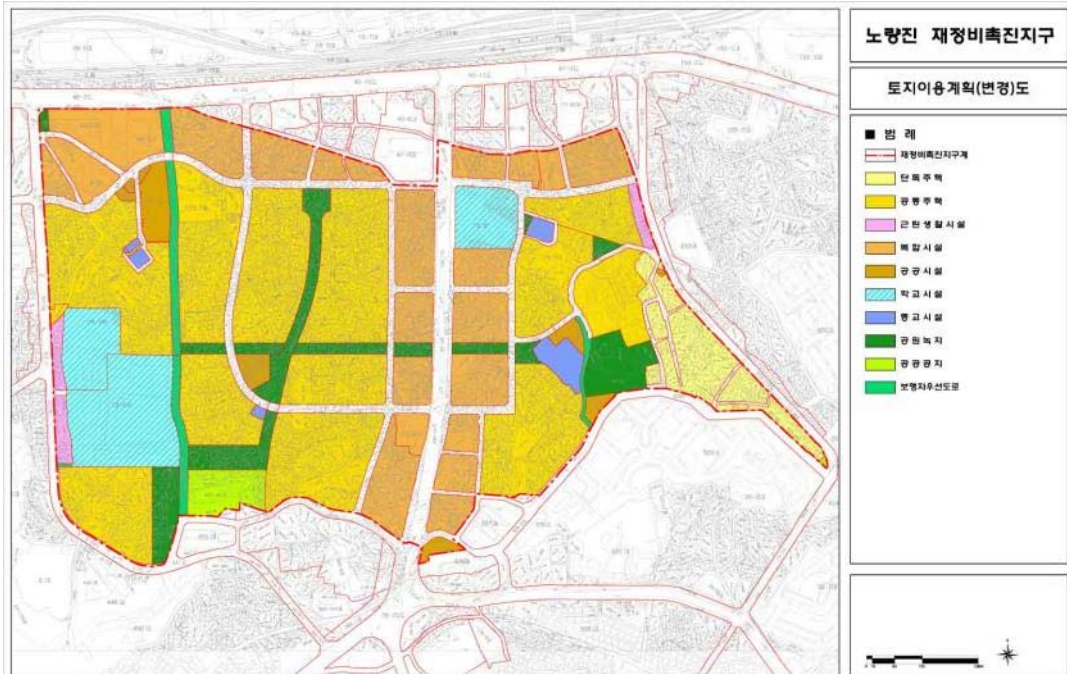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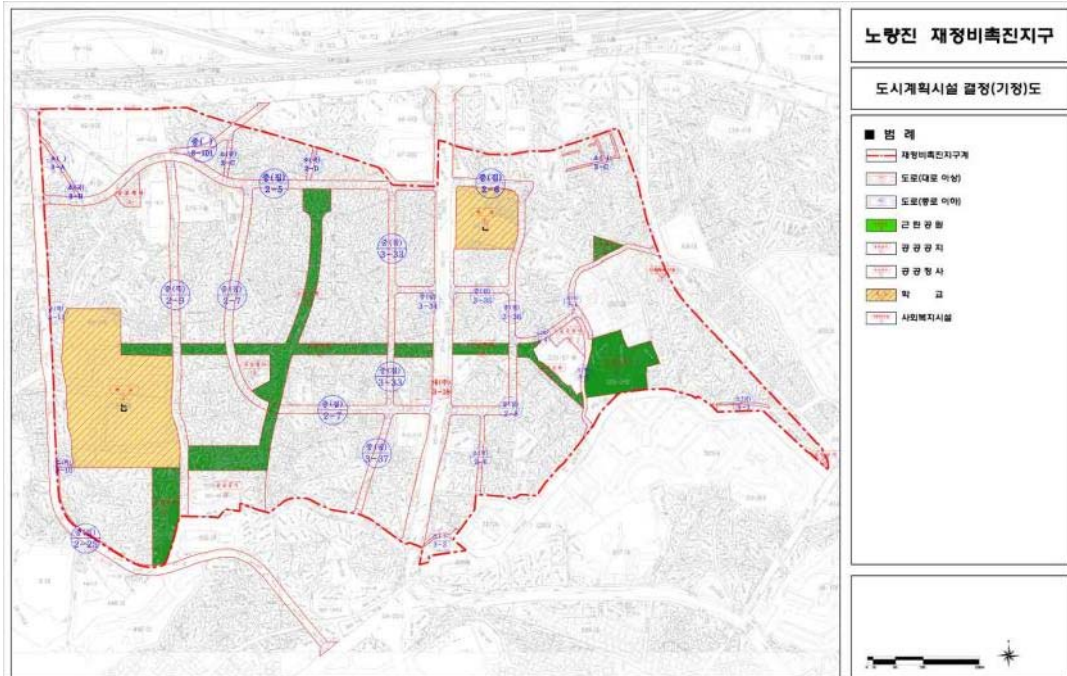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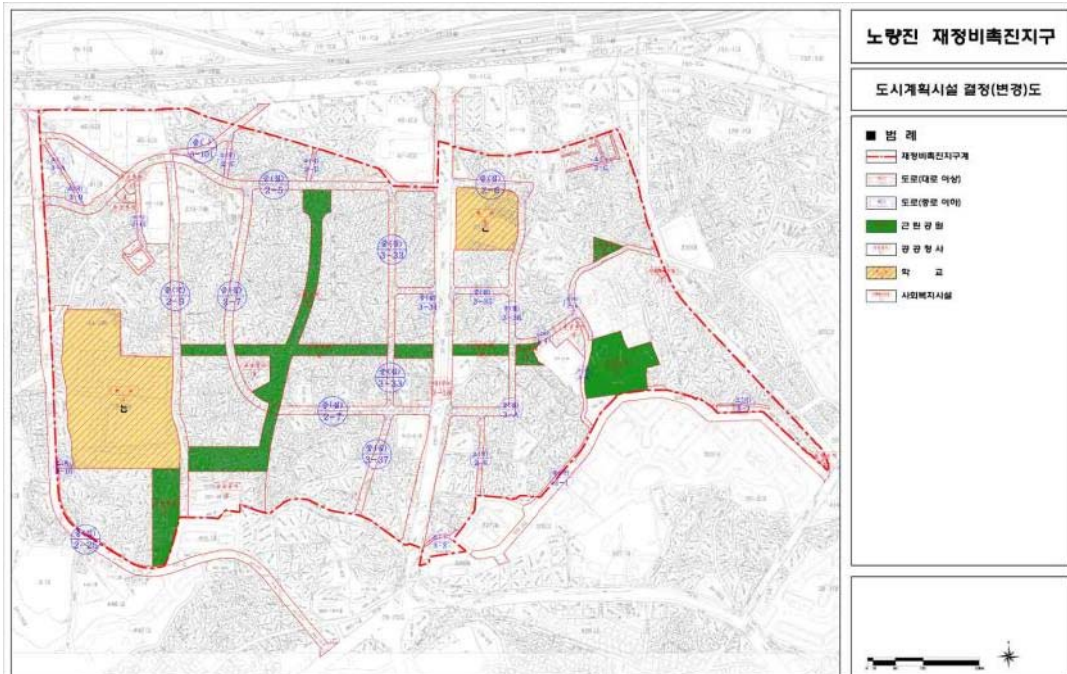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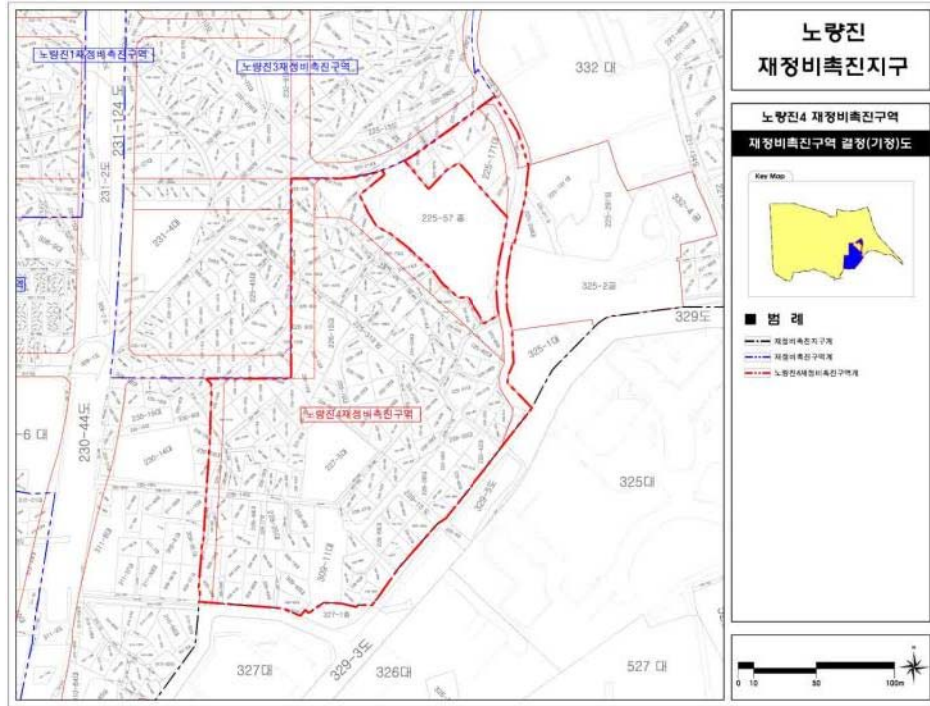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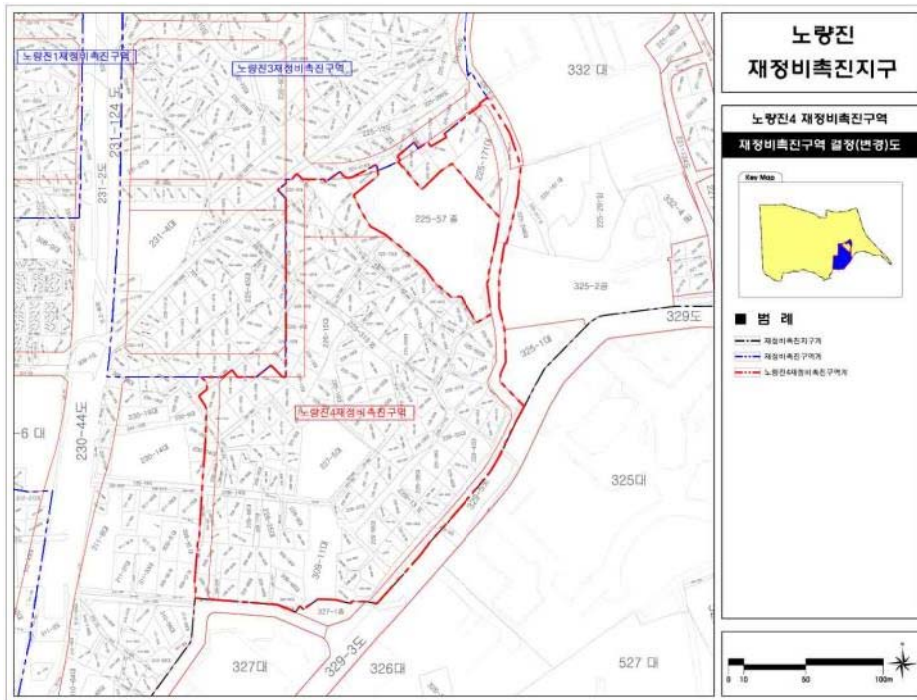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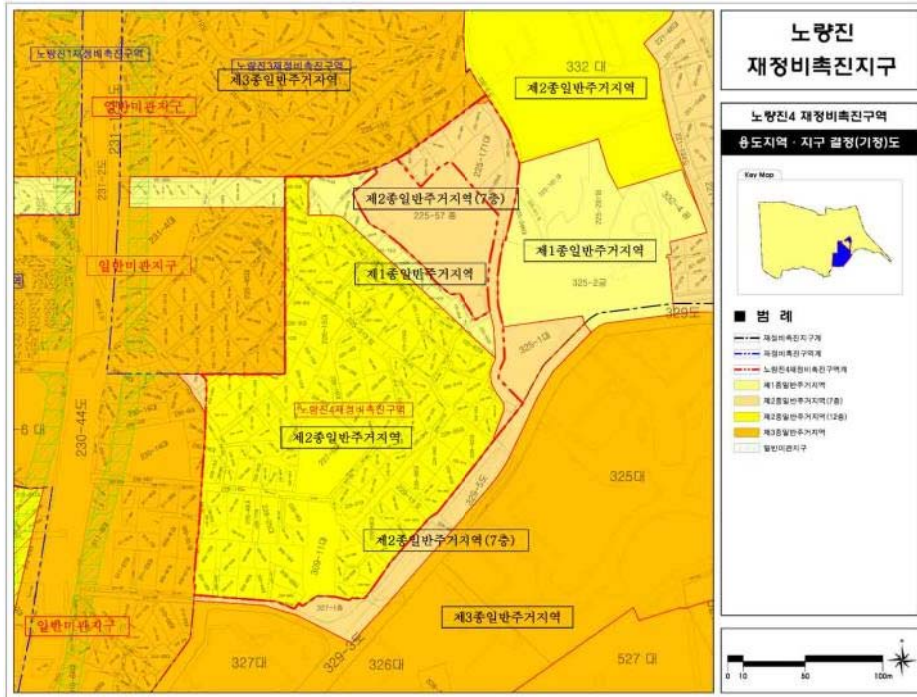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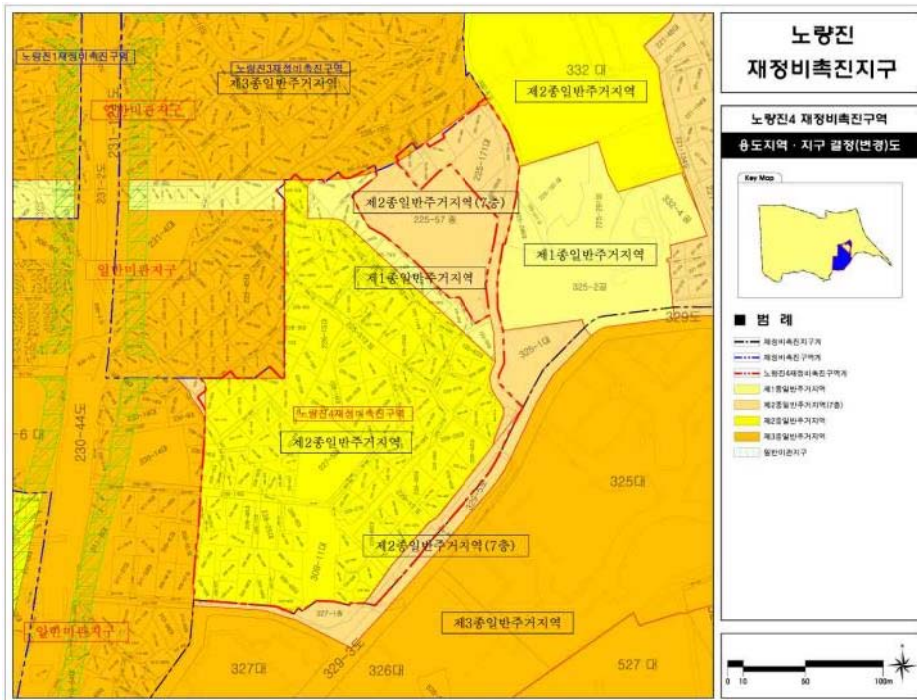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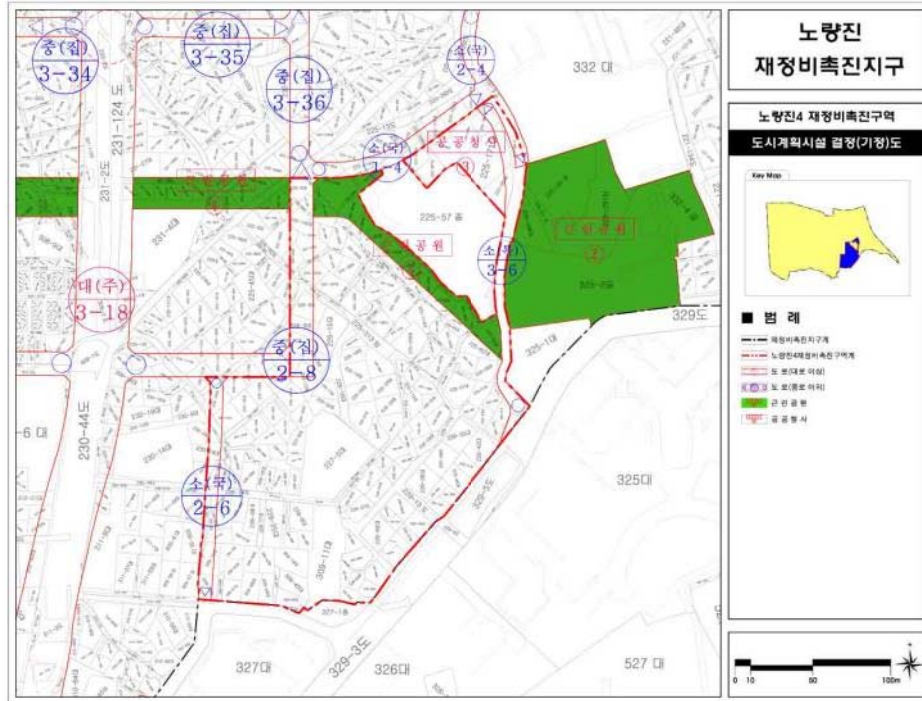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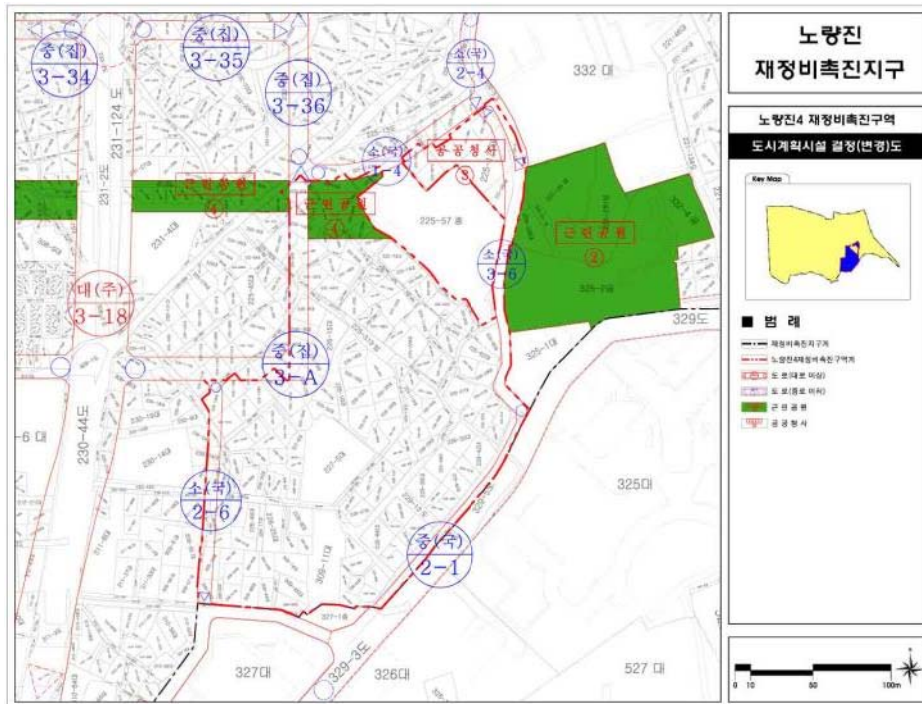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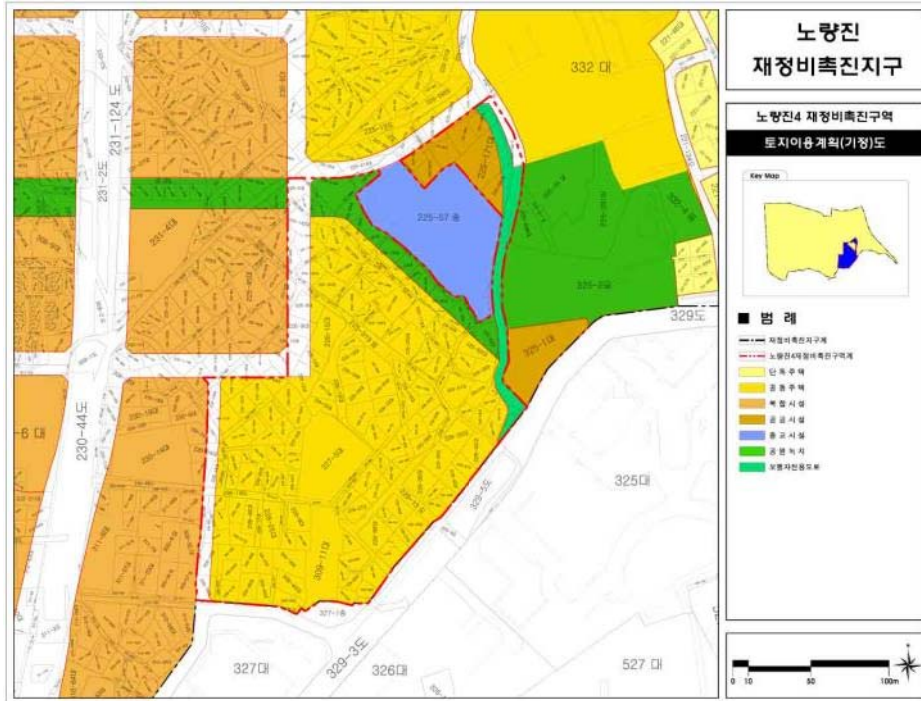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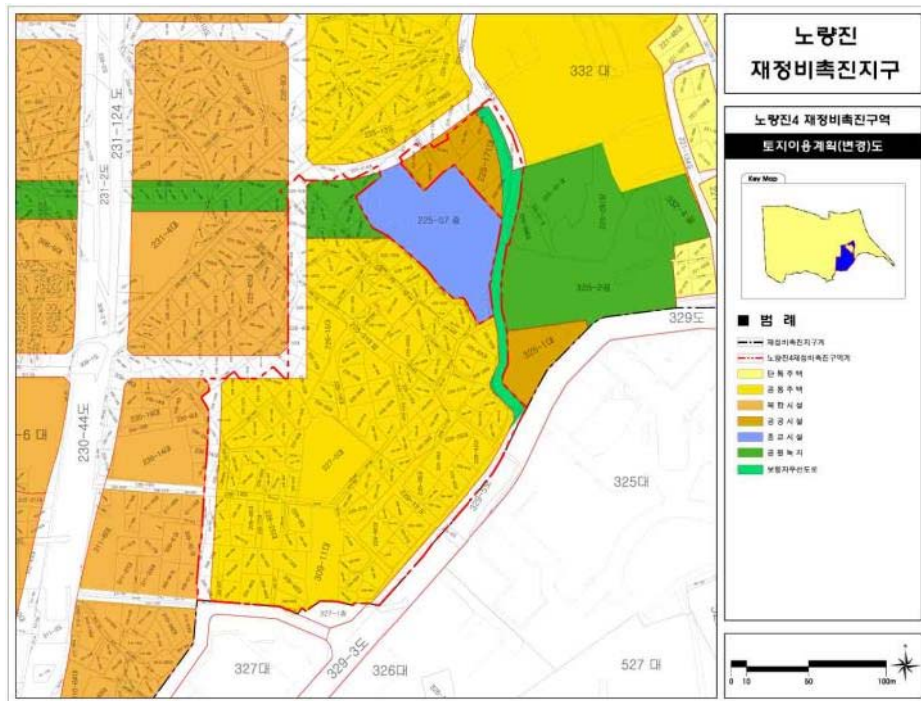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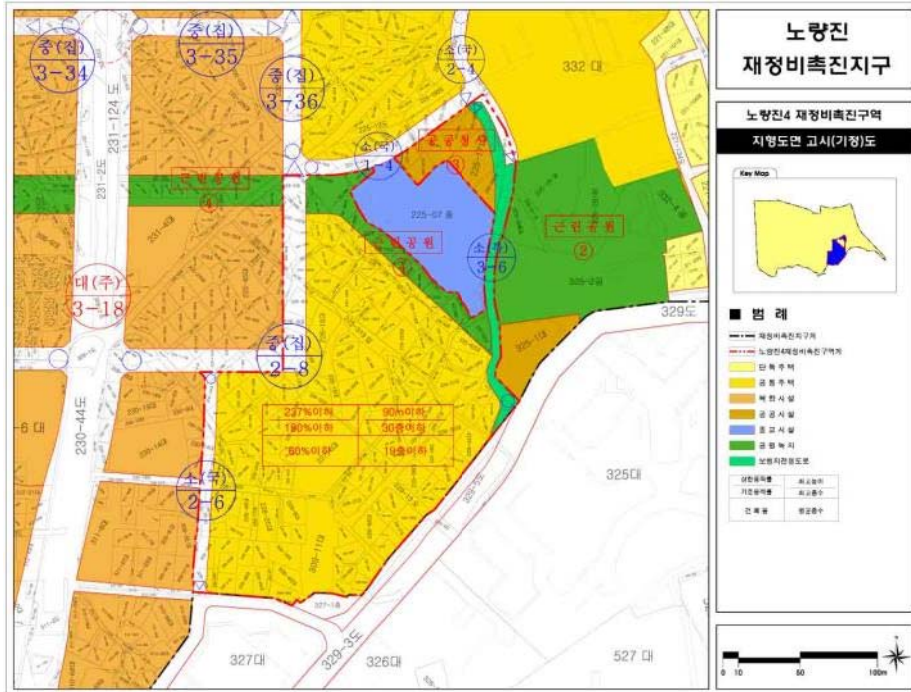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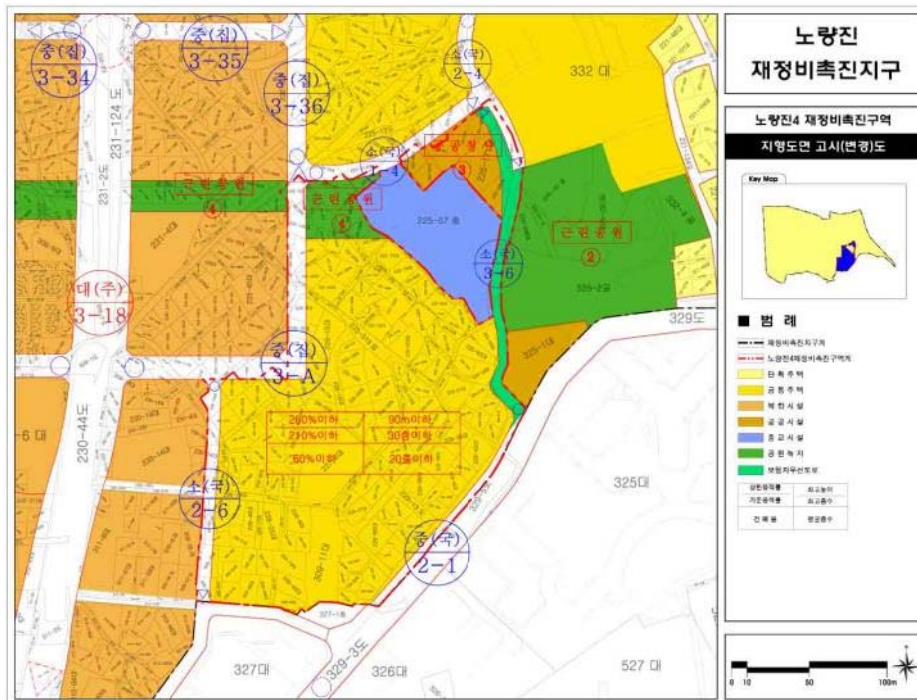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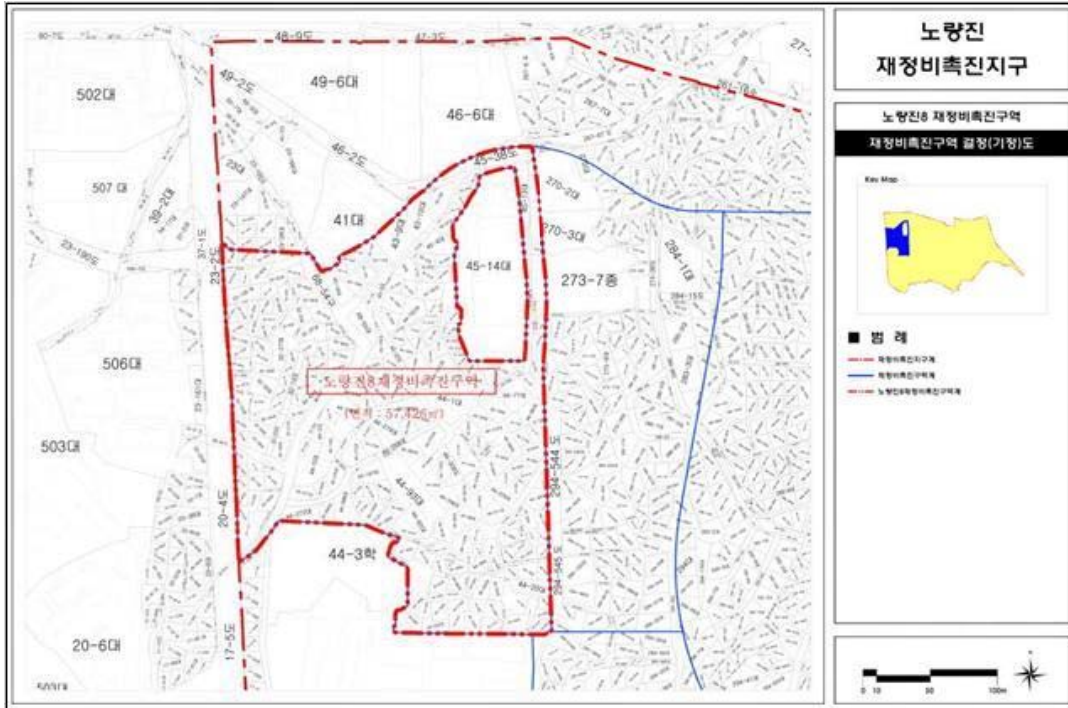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지형도면 고시(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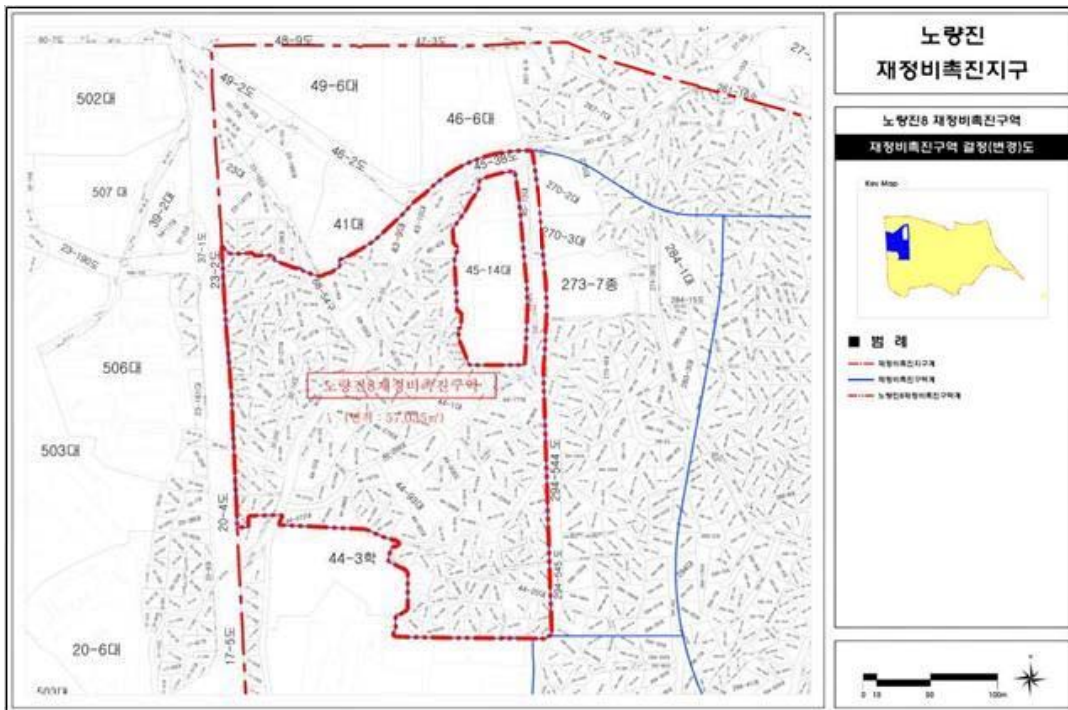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지형도면 고시(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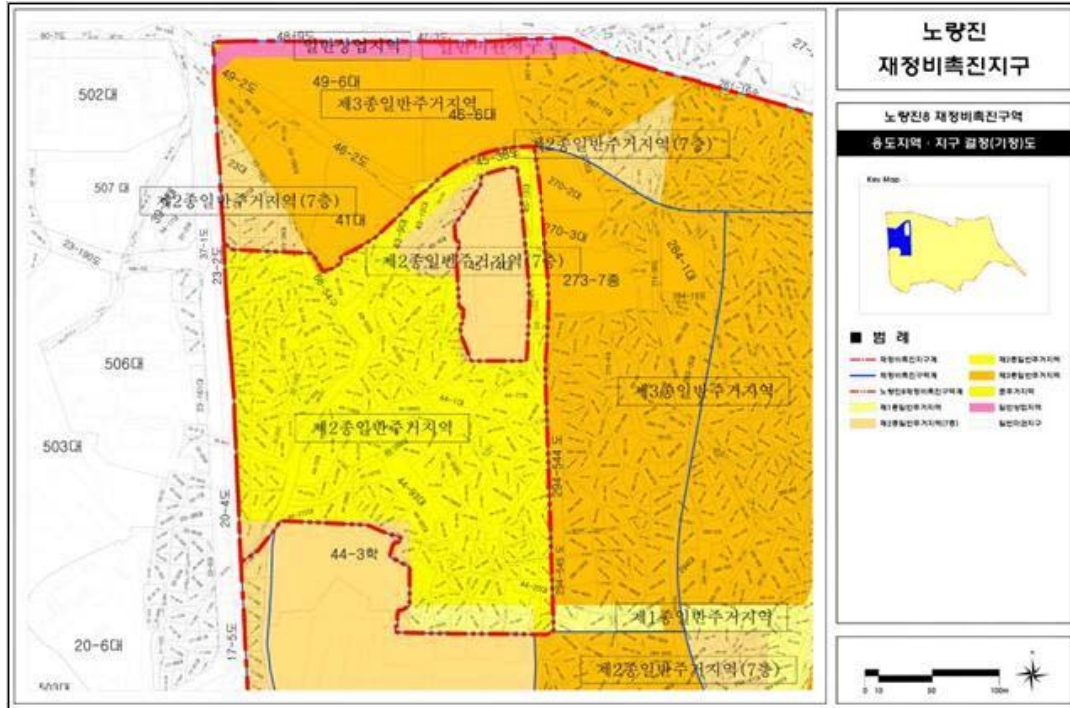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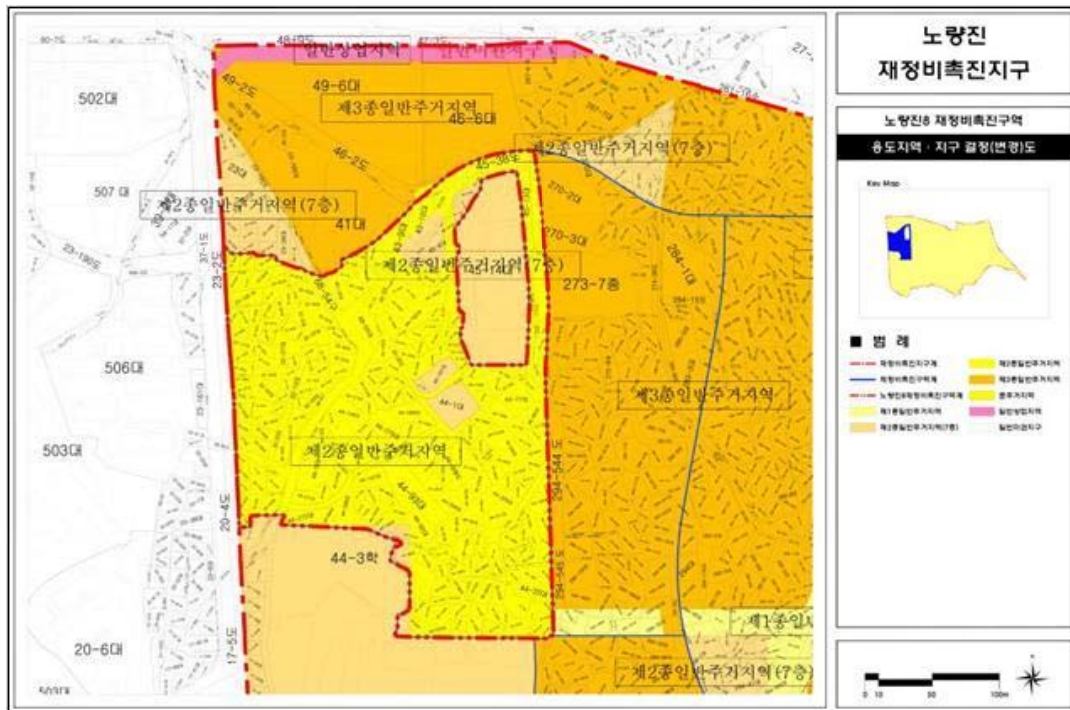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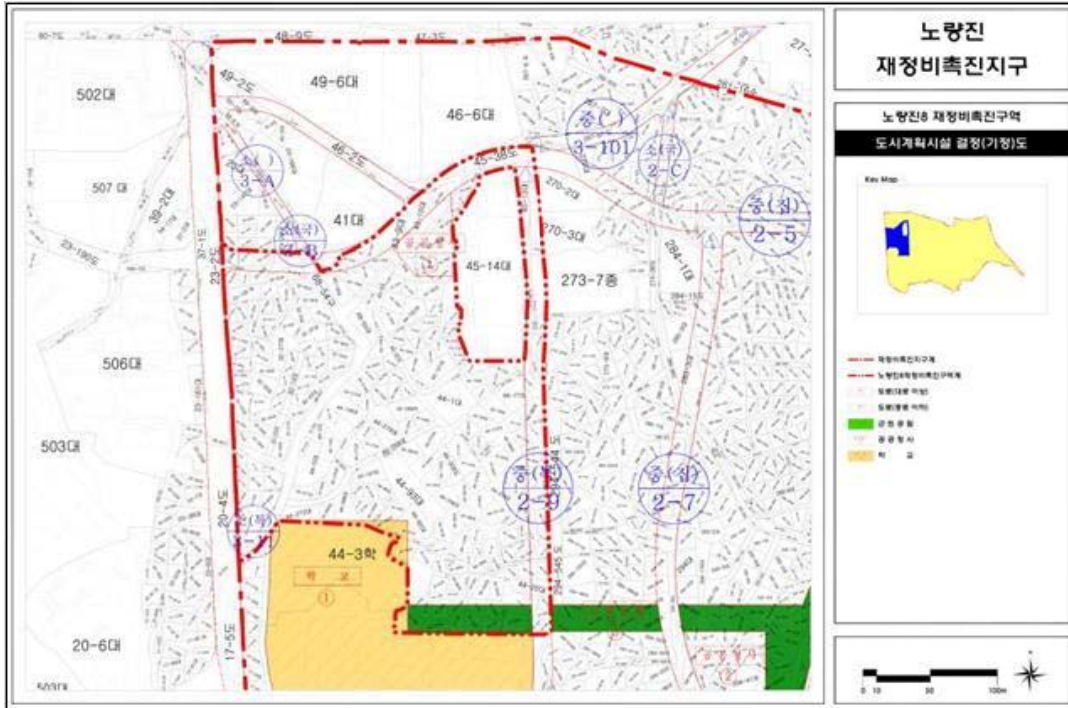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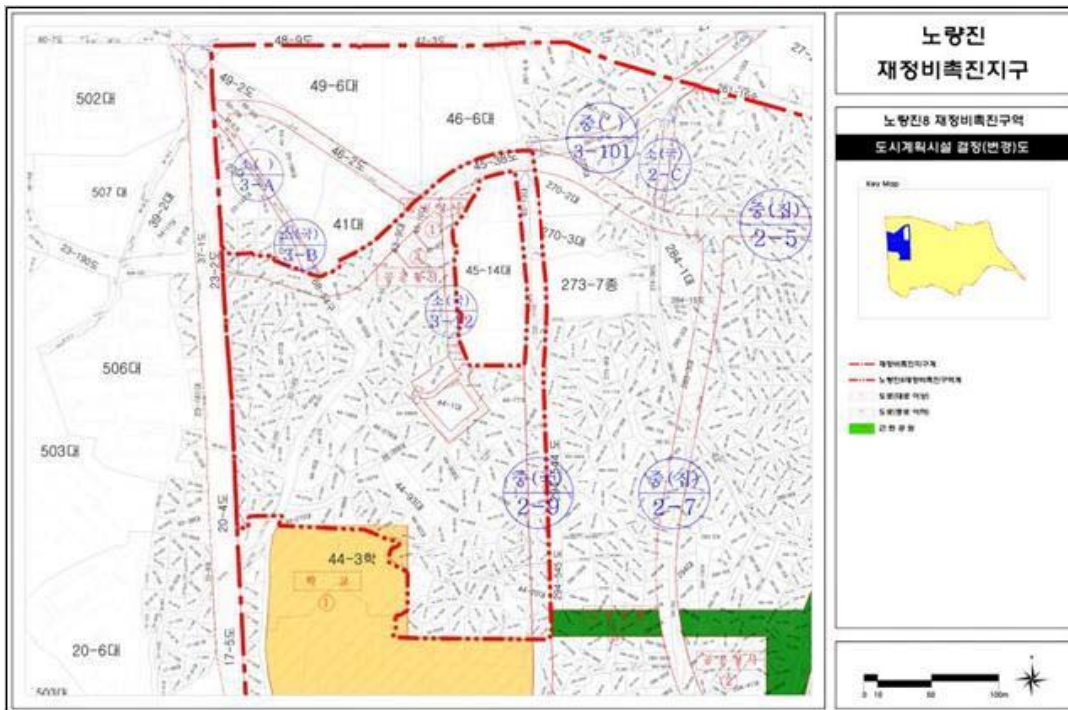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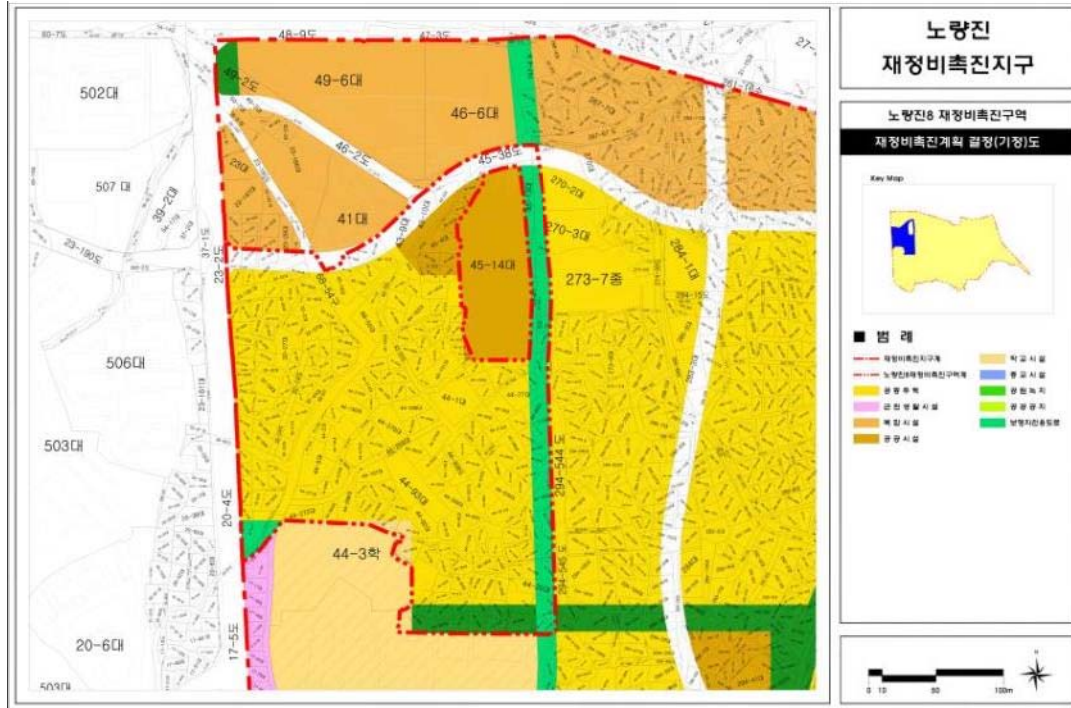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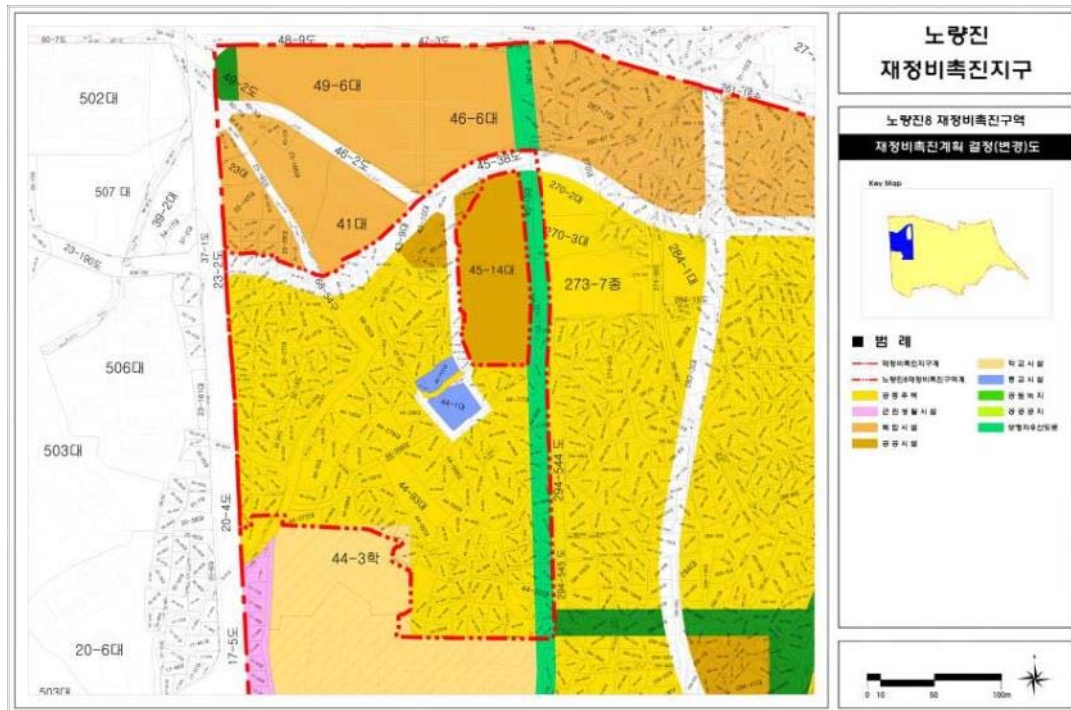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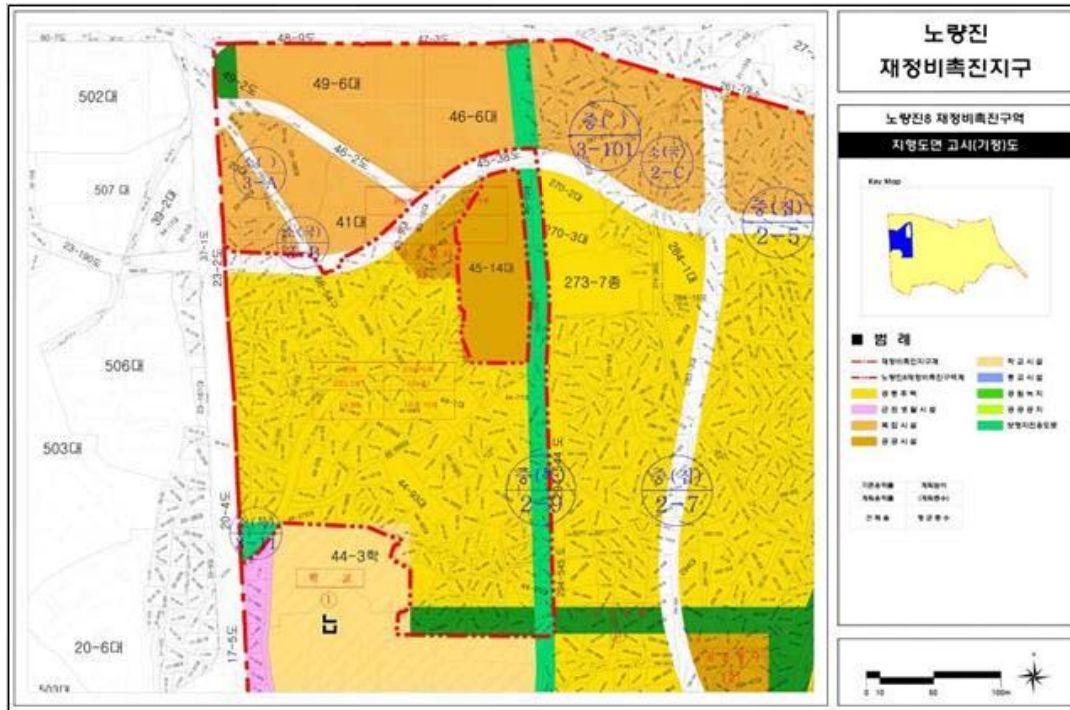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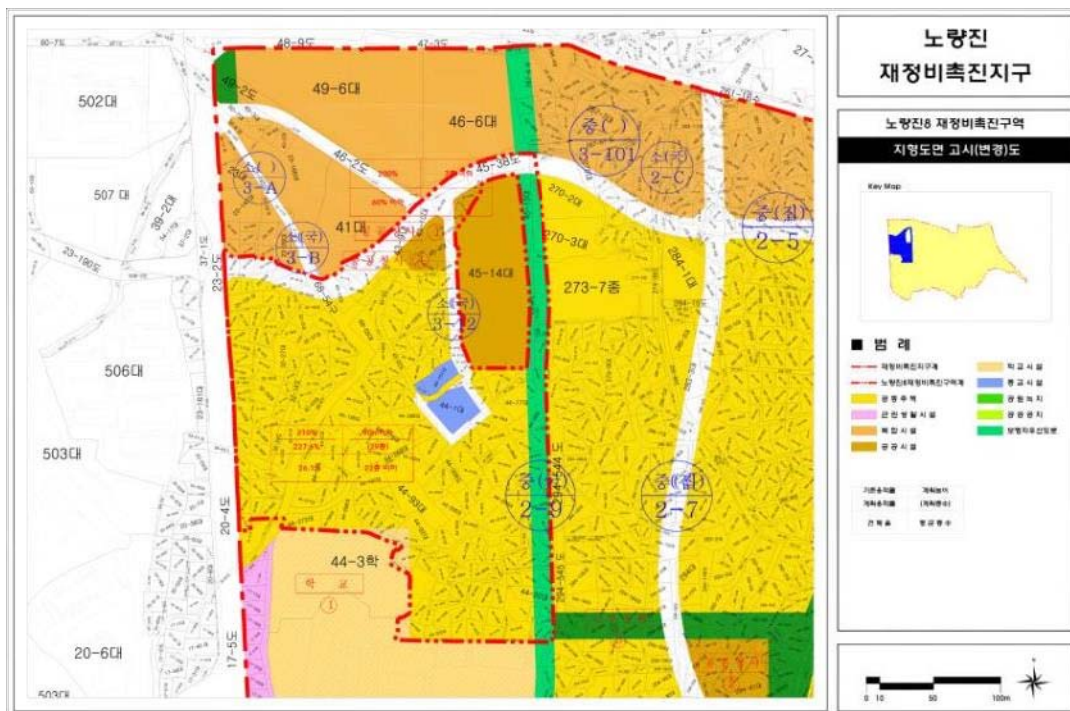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도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지형도면 고시(기정)도



■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지형도면 고시(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호
공동주택 관리·윤리에 관한 교육 고시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2017년도 공동주택 관리·윤리에 관한 교육”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장

1. 위탁교육기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 위 탁 교 육 명 : 주택관리·윤리에 관한 교육
3. 교 육 대 상 자 :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보)
4. 근 거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70조
공동주택 관리법 제89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5. 문 의 사 항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28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고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 대한“2017년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장

1. 위탁교육기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 위 탁 교 육 명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교 육 대 상 자 : 관리사무소장
4. 근 거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공동주택 관리법 제89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5. 문 의 사 항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28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2호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8-482호(2008.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8호(2009.1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5호(201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2호(2011.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9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0호(2013.10.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00호(2015.12.1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7호(2016.8.25.) 등으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			지정목적
			기 정	증 감	변 경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대	275,505.5	-	275,505.5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업무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년도 : 2020년

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2)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3)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비 고
도 로	60,285.7㎡ (21.9%)	-	60,285.7㎡ (21.9%)	도로 계획 변경없으며, 단순착오에 의한 결 정도 상 오류 정정
공원 · 광장 공공공지 녹 지	4,972㎡ (1.8%)	-	4,972㎡ (1.8%)	-
문 화	-	-	-	-
사회복지시설	309㎡ (0.1%)	-	309㎡ (0.1%)	-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없음)

- 「천호 · 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5) 교통계획(변경없음)

- 「천호 · 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6) 경관계획(변경없음)

- 「천호 · 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

가) 정비예정구역(변경없음)

지구명	구역명	구분	위 치	면 적(㎡)	정비수법	비 고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 지구	천호1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55-8번지 일대	10,557	전면개발	변경 없음
	천호3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09-3번지 일대	5,227	전면개발	-
	천호4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10-100번지 일대	17,394.2	전면개발	-
	성내1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49-14번지 일대	6,299	전면개발	-
	성내3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48-6번지 일대	6,729	전면개발	-
	성내5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15번지 일대	7,096	전면개발	-

※ 천호1촉진구역의 변경 없는 단순착오에 의한 결정도면 정정

나) 구역별계획(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m)	사업방식
						기준	최대		
천호1 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55-8번지 일대	10,557	판매	60% 이하	714	810	140	도시환경 정비사업
천호3 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09-3번지 일대	5,227	업무,판매	60% 이하	600	790	120	도시환경 정비사업
천호4 촉진구역	기정	천호동 410-100번지 일대	17,394.2	주거, 근린생활	60% 이하	591	793	120	도시환경 정비사업
성내1 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49-14번지 일대	6,299	업무,판매	60% 이하	600	785	140	도시환경 정비사업
성내3 촉진구역	기정	성내동 48-6번지 일대	6,729	업무,판매, 주거,근린	60% 이하	610	800	140	도시환경 정비사업
성내5 촉진구역	신설	성내동 15번지 일대	7,096	업무,판매	60% 이하	500	650	140	도시환경 정비사업

※ 천호1촉진구역의 변경 없는 단순착오에 의한 결정도면 정정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구 분		사업구역 면적 (㎡)	용도지역	필지수 (㎡)	건물수 (㎡)	비고
천호1촉진구역	기정	10,557	일반상업	30	8	-
천호3촉진구역	기정	5,227	일반상업	109	53	-
천호4촉진구역	기정	17,394.2	일반상업	23	10	-
성내1촉진구역	기정	6,299	일반상업	18	8	-
성내3촉진구역	기정	6,729	준주거, 일반상업	45	29	-
성내5촉진구역	기정	7,096	근린상업	4	5	-
계	기정	53,302.2	-	229	113	-

※ 천호1촉진구역의 변경 없는 단순착오에 의한 결정도면 정정

9)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10) 용도지구 결정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11)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15) 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없음)

가) 천호1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천호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5-8번지 일원	10,557	-	10,557	-

※ 천호1촉진구역의 변경 없는 단순착오에 의한 결정도면 정정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0,557	-	10,557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580	-	1,580	15.0	-
	도 로	1,249 (162)	-	1,249 (162)	11.9	변경 없음
	공공공지	331	-	331	3.1	-
택 지 (획 지)	소 계	8,977	-	8,977	85.0	-
	획 지	8,977 (162)	-	8,977 (162)	85.0	변경 없음

※ ()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 도로, 획지 계획 변경 없는 단순착오에 의한 결정도면 정정

■ 도시계획(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도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3	110	25-31	주간선	3,000 (268)	풍납동 광5	암사동 강변	건고201호 (75.12.17)	올림픽로 (부분편입)
기정	소로	3	31	6	집산도로	308 (107)	대로3-110 (천호동 430-15)	천호동 413-8	서울시고시 제3호(69.1.18)	-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00 (22)	광로2-5 (천호동 455)	천호동 455-6	강동구고시 제1994-28호 (1994.5.21)	도로계획 변경 없는 단순착오에 의한 결정도 상 오류 정정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6	천호동 430-2	천호동 430-14	서울시고시 제2015-400호 (15.12.17.)	-
기정	소로	3	5	4.5	국지도로	8	천호동 430-12	천호동 430-9	서울시고시 제2015-400호 (15.12.17.)	-

※ ()는 재정비촉진구역 내 연장

※ 소로2-3의 계획 변경 없는 단순착오에 의한 결정도면 정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입체적 결정 규모				비고
				폭(m)	연장(m)	해수면 기준높이(m)	면적 (㎡)	
기정	①	도로	천호동 455-6 일대	0~7m	81	16.2 ~ 23.3 (지표면으로부터 4.5m) (지하구조물 깊이 1.9m)	162	●지하구조물 - 깊이 : 1.9m - 길이 : 7.4m - 폭 : 1.2m

주) 입체적 결정 취지 : 천호1축진구역 북측 도로를 직선화 할 경우 사유지(모텔) 저촉에 따른 보상비 과다로 사업시행이 어려
 워 축진1구역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입체 결정

주) 도로의 좌측구간(연장:0m~73.6m)은 지상부만을 결정하며, 우측구간(연장:73.6m~81m)은 지하구조물을 포함하여 결정
 좌측구간(연장:0m~73.6m) : 지표면(17.2m~18.1m)+4.5m(차량통행높이)
 우측구간(연장:73.6m~81m) : 지하구조물(16.2m~18.8m)+지표면(18.1m~18.8m)+4.5m(차량통행높이)

주) 입체결정면적은 향후 확정측량 성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계획 변경 없는 단순착오에 의한 결정도면 정정

○ 입체적 결정도, KEYMAP, 단면도(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축진지구 재정비축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공공공지(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축진지구 재정비축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축진지구 재정비축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축진지구 재정비축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변경없음)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	8,977	-	천호동 455-8번지 일원	8,977	변경 없음

※ 획지 변경 없는 단순착오에 의한 결정도면 정정

나) 천호3재정비축진구역(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축진지구 재정비축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다) 천호4재정비축진구역(변경)

- 「천호·성내재정비축진지구 재정비축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라) 성내1재정비축진구역(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축진지구 재정비축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마) 성내3재정비축진구역(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바) 성내5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16) 준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17) 광고물 관리 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18)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19) 방재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20) 정보화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21) 에너지 순환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22) 특성화 계획(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2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없음)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광로	2	5	50	주간선	7,200 (495)	천호대교 (천호사거리)	상일동시계 (성내동산18-4)	건고198호 (71.4.7)	천호대로 (부분편입)
기정	대로	3	110	25-31	주간선	3,000 (268)	풍납동 광5	암사동 강변	건고201호 (75.12.17)	올림픽로 (부분편입)
기정	중로	1	163	20	보조간선	300	천호동 434-2	천호동 406-2	서울시고시 제312호 (77.8.29)	구천면길
기정	중로	1	천호2	20	보조간선	1,065 (354)	길동 413-45	천호동 550-6	서울시고시 제2001-177호 (01.6.5)	진향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43	천호동 566-8 (천호대로)	천호동 566-6	서울시고시 제1993-467호 (94.1.5)	-
기정	소로	1	2	10~12	집산도로	240	광로2-5 (천호동 451-20)	천호동 410-372 (진향도길)	-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천호3	20	보조간선	195	광로2-5 (천호동449)	천호동 166-43	서울시고시 제3호(69.1.18)	-
기정	소로	1	3	10	집산도로	100	성내동19-9	광로2-5 (성내동19-1)	서울시고시 제1992-335호 (92.10.24)	-
기정	소로	3	31	6	집산도로	308	대로3-110 (천호동 430-15)	천호동 413-8	서울시고시 제3호(69.1.18)	-
기정	중로	3	천호1	12	집산도로	163	천호동 411-64	천호동 452-33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2008.12.26)	-
기정	소로	1	4	8~10	집산도로	502	성내동 14-5	성내동 80-7	서울시고시 제3호(69.1.18)	-
기정	중로	2	성내2	11~14	보조간선	141	광로2-5 (성내동 50-32)	성내동 43-11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2008.12.26)	-
기정	중로	3	407	9~15	보조간선	277	광로2-5 (천호동 453-15)	천호동 409-3	서울시고시 제2001-177호 (01.6.5)	-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91	성내동 77-41	성내동 48-14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2008.12.26)	-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67	성내동 57-12 (천호대로)	성내동 48-27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2008.12.26)	-
기정	소로	2	1	6~8	국지도로	162	대로 3-110 (천호동 427-3)	천호동 425-105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2008.12.26)	-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00	광로2-5 (천호동 455)	천호동 455-6	강동구고시 제1994-28호 (1994.5.21)	도로 계획 변경 없는 단순착오에 의한 결정도면 정정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26	천호동 410-42	중로2-412 (천호동 409-28)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2008.12.26)	-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21	광로2-5 (천호동453-4 0)	천호동 453-6	서울시고시 제2008-482호 (2008.12.26)	-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6	천호동 430-2	천호동 430-14	-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93	중로 1-163 (천호동 425-8)	천호동 427-103	서울시고시 제354호(90.10.24)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51	천호동 427-23	천호동 427-31	서울시고시 제354호(90.10.24)	-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54	천호동 450-23	천호동 566-10	서울시고시 제1993-467호 (94.1.8)	-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90	천호동 566-10	천호동 566-6	서울시고시 제1993-467호 (94.1.8)	-
기정	소로	3	45	6	국지도로	114	광로 2-5 (성내동 13-9)	성내동 12-3	서울시고시 제34호(76.2.20)	-
기정	소로	3	46	4	국지도로	160	성내동 80-14	성내동 77-15	서울시고시 제2011-45호 (2011.02.10)	-
기정	소로	3	5	4.5	국지도로	8	천호동 430-12	천호동 430-9	-	-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8	천호동 566-10	천호동 450-67	-	-

※ ()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연장

※ 소로2-3 계획 변경 없는 단순착오에 의한 결정도면 정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입체적 결정 규모				비고
				폭(m)	연장(m)	해수면 기준높이(m)	면적 (㎡)	
기정	①	도로	천호동 455-6 일대	0~7m	81	16.2 ~ 23.3 (지표면으로부터 4.5m) (지하구조물 깊이 1.9m)	162	●지하구조물 - 깊이 : 1.9m - 길이 : 7.4m - 폭 : 1.2m

주) 입체적 결정 취지 : 천호1촉진구역 북측 도로를 직선화 할 경우 사유지(모델) 저촉에 따른 보상비 과다로 사업시행이 어려
위 촉진1구역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입체 결정

주) 도로의 좌측구간(연장:0m~73.6m)은 지상부만을 결정하며, 우측구간(연장:73.6m~81m)은 지하구조물을 포함하여 결정
좌측구간(연장:0m~73.6m) : 지표면(17.2m~18.1m)+4.5m(차량통행높이)

우측구간(연장:73.6m~81m) : 지하구조물(16.2m~18.8m)+지표면(18.1m~18.8m)+4.5m(차량통행높이)

주) 입체결정면적은 향후 확정측량 성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계획 변경 없는 단순착오에 의한 결정도면 정정

○ 입체적 결정도, KEYMAP, 단면도(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공원(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녹지(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광장(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공공공지(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2016. 8.)」 참조

라.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마.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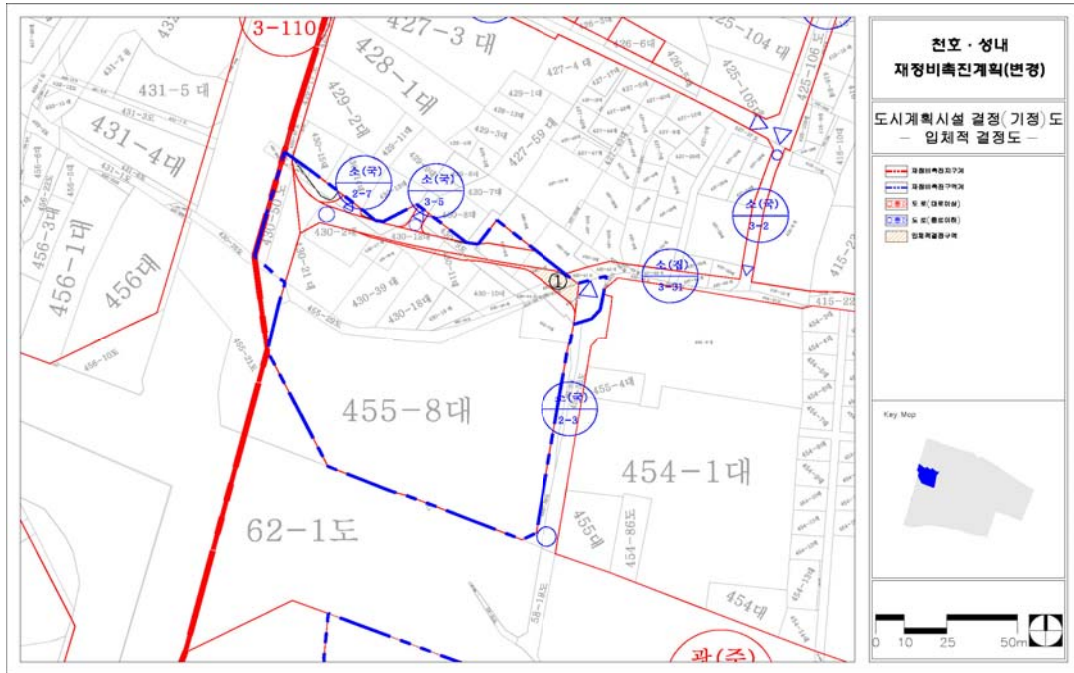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2) 및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02-3425-605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결정도(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포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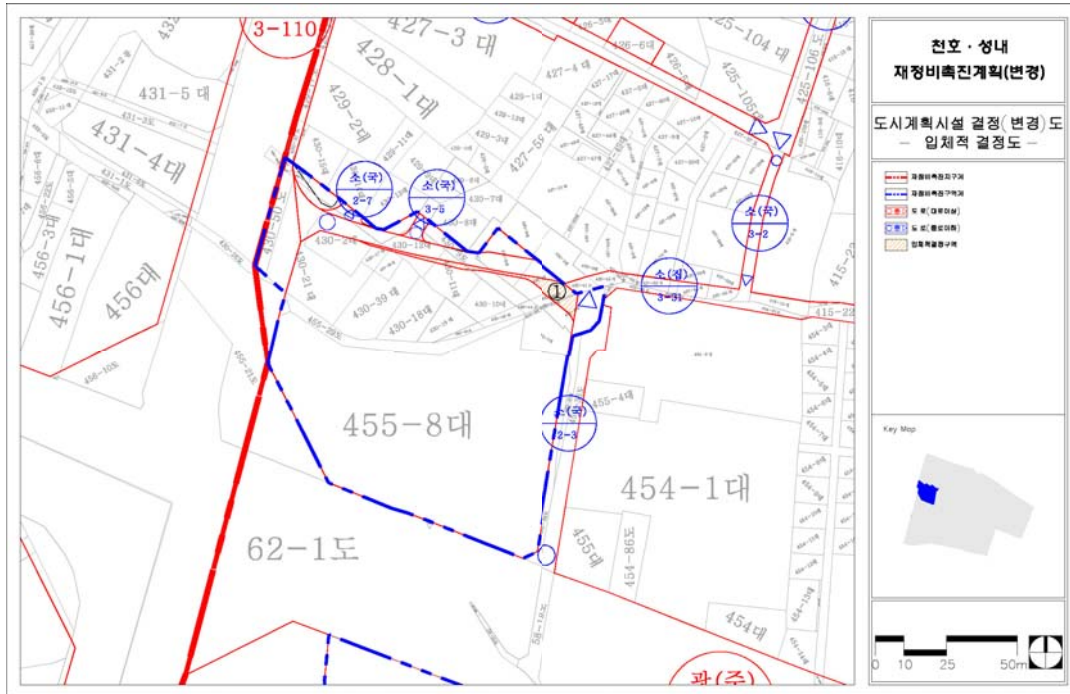
■ 기 정



※ 확대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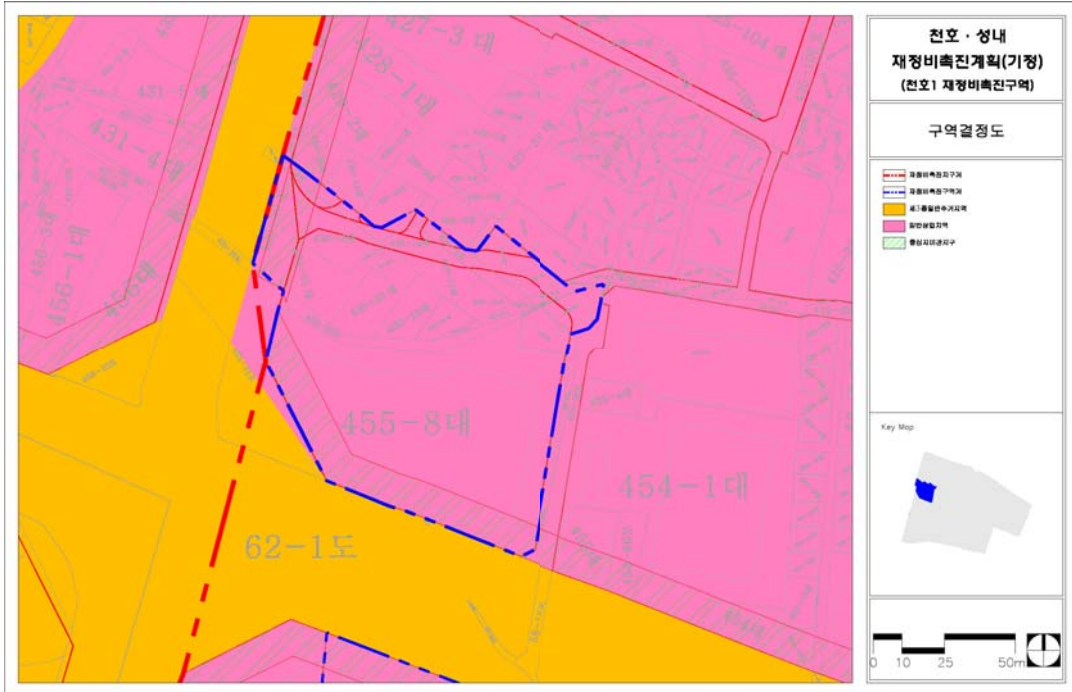
※ 확대도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없는 단순착오에 의한 결정도면 정정

< 구역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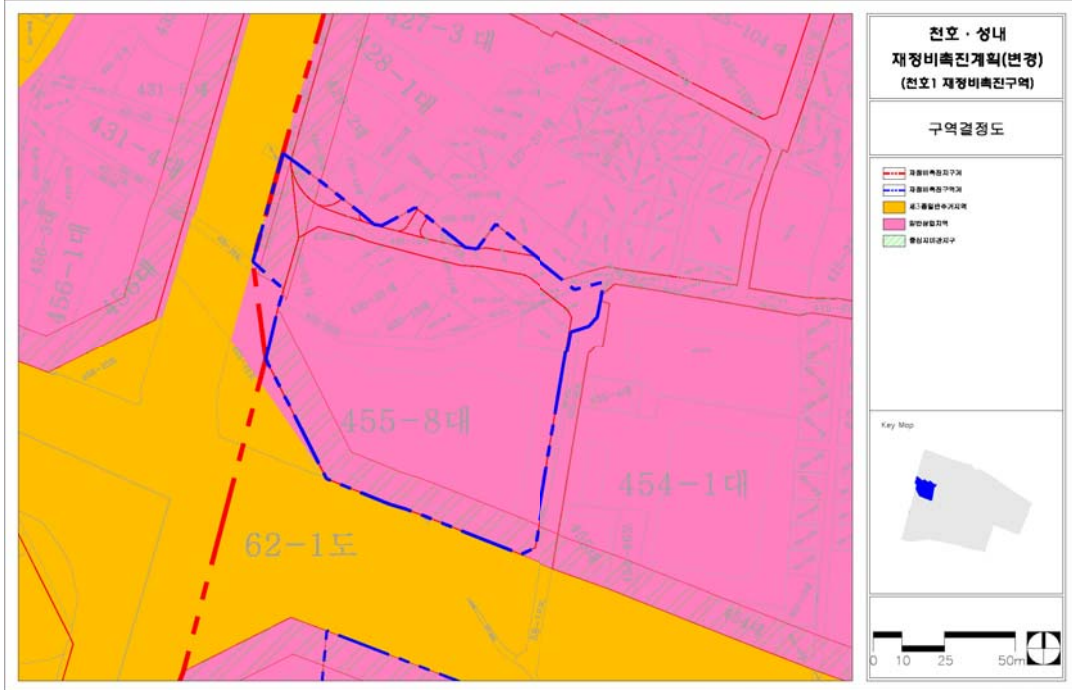
■ 기 정



※ 확대도



■ 변경



※ 확대도



※ 천호1촉진구역 변경 없는 단순착오에 의한 결정도면 정정

〈 정비계획결정도 〉

■ 기 정



※ 확대도



■ 변경



※ 확대도



※ 획지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없는 단순착오에 의한 결정도면 정정

< 건축배치도 >

■ 기 정



※ 확대도



■ 변경



※ 확대도



※ 도시계획시설(도로), 건축배치도 변경 없는 단순착오에 의한 결정도면 정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정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강남구, 성동구 관내 신규 조성한 공원에 대하여 부시장 방침 제110325호(행정과, 1995. 3. 20.)에 의거 그 명칭을 제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장

1. 공원(어린이·소공원)명칭 제정내역

연 번	구 분	위 치	규모(㎡)	제정 공원명칭	비고(기존명칭)
1	소공원	금천구 독산1동 441-25일대	3,058	도하	
2	소공원	금천구 시흥3동 963-1일대	2,162	박미사랑	
3	어린이공원	강남구 세곡동 522-1	2,645	세곡천	세곡1 어린이공원1
4	어린이공원	강남구 세곡동 526-2	2,633	대왕	세곡1 어린이공원2
5	어린이공원	강남구 세곡동 548	4,282	도담	강남 어린이공원1
6	어린이공원	강남구 세곡동 546	2,483	행복	강남 어린이공원2
7	소공원	강남구 율현동 254-3답 일원	5,704	방죽	세곡2 소공원1
8	소공원	강남구 율현동 192-4구일원	692	솔밭	세곡2 소공원2
9	소공원	강남구 세곡동 549	1,199	쉽표	강남 소공원1
10	어린이공원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번지	1,500	견우	뉴타운3구역 어린이공원1
11	어린이공원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번지	1,500	직녀	뉴타운3구역 어린이공원2
12	소공원	성동구 하왕십리동 1002-1번지	1,514	어울림	왕십리 KCC스위첸 소공원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38) 및 금천구(☎02-2627-1653), 강남구(☎02-3423-6244), 성동구(☎02-2286-5654) 공원녹지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7-1	재단법인 삼성꿈장학재단 (대표 송석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하위 20층	○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	20 (현금)	전국	'17.1.11. ~'17.12.31.
						'18.1.1. ~'19.12.31.
2017-2	사단법인 휴먼인러브 (대표 김영후)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 1110호	○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교육, 의료비 등) 및 재난피해 극복 지원(국내 자연재난 제외)	200 (현금)	전국	'17.1.11. ~'17.12.31.
						'17.1.11. ~'17.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4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7-3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대표 손희송)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4층	○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및 재 난피해 지원(국내 자연재난 제외)	900 (현금)	전국	'17.1.17. ~'17.12.31. '17.1.17. ~'19.1.16.
2015-100-1	재단법인 승일희망재단 (대표 박승일, 로션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1902호	○ 루게릭 환우를 위한 루게릭요 양병원 건립비 마련 ※ 변경내용 : 사용기간 변경 - 사용기한 : (당초) '16.10.20. (변경) '17.12.31.	1,000 (현금)	전국	'14.10.21. ~'15.10.20. '14.10.21. ~'17.12.31.
2016-90-1	사단법인 위스타트 (대표 송필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0	○ 국내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개인 맞춤형 역량강화 및 복지, 교육, 건강 통합 서비 스) ※ 변경내용 : 사용기간 변경 - 사용기한 : (당초) '16.12.31. (변경) '17.2.28.	200 (현금)	전국	'16.9.8. ~'16.12.31. '16.9.8. ~'17.2.28.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5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7-4	사단법인 원글로벌코리아 (대표 김종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7길 13 6층	○ 해외봉사, 해외긴급재난구 호 복구, 국내 취약계층 지원, 네팔 교육지원 및 지진피해 복구지원	900 (현금 및 물품)	전국	'17.1.19. ~'17.12.31. '17.1.19. ~'18.12.31.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7-5	재단법인 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 (대표 제프리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930호	○ 중증환아 및 장애아동 지 원	100 (현금)	전국	'17.1.19. ~'17.12.31.
						'18.1.1. ~'18.12.31.
2017-6	(사)오퍼레이션 스마일코리아 (대표 이종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1, 1102호	○ 전세계 안면기형 및 신체 장애 어린이 수술지원	200 (현금 및 물품)	전국	'17.1.19. ~'18.1.18.
						'17.1.19. ~'19.1.18.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7-7	재단법인 이랜드재단 (대표 이경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50, 목동 5단지 A상가 201호	○ 위기가정 지원(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770 (현금)	전국	'17.1.20. ~'17.12.31.
						'17.1.20. ~'18.12.31.
2017-8	(사)남북의료협력재단 (대표 김창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1 삼보호정빌딩 602호	○ 보건의료분야 대북인도적지원 및 남북 의료협력 관련 조 사연구	500 (현금)	전국	'17.1.20. ~'18.1.19.
						'17.1.20. ~'20.1.19.
2017-9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대표 박춘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8, 210호	○ 난임가정 체외수정기술 지원 및 난임가정 상담센터 운영 등	207 (현금 및 물품)	전국	'17.1.20. ~'17.12.31.
						'17.1.20. ~'18.3.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별표5]에 의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예정자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1. 처분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해당 운수종사자
2. 예정된 행정처분
 - 택시운전자격 취소 : 1인[명단 별첨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해당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처분근거 : 동법 시행령 제59조[별표5]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2월 22일 18:00 까지
 - 장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7층 택시물류과
 - 담 당 자 : 황돈영 (02-2133-2324)
6. 유의사항
 - 서면(별지 제11호 서식),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운전면허, 택시운전자격 부활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 정 된 처 분 의 제 목	택시운전자격 취소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97.10.20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첨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행정처분 대상자

연번	택시자격증번호	성명	주소
1	090105692	문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31, 10동 2**호(금곡동 **빌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6호****『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공고**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시 예규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3(하도급제한)과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제10항~제12항을 신설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안건 상정전에 규제영향분석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장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계약 상대자의 책임 및 하도급 제한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팀장 류용열, 담당 윤희태								
4. 근거법령명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및 행정자치부 예규(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관 련 규제수	1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서울시와 계약하는 건설공사업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시 주계약자는 해당 공종에 대해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또한,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	--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직접 계약당사자의 지위로 참여하는 제도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9조(공동계약) 및 행정 자치부 예규(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의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구성원별로 공사를 각자 분담해 시공을 하고 있음.
- 그간 종합건설업체는 건설공사를 원도급 받아 관리만하고, 대부분 공사를 하도급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가 직접시공을 전담하는 수직적·종속적인 원·하도급 생산체제를 이루어 왔음.
 - 이로 인해 하도급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불법으로 재하도급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비가 삭감되어 종국적으로는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고 노무비가 삭감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계약받고, 대금을 직접받기 때문에 공사대금 미지급 등 불법·불공정 행위가 근원적으로 제거될 뿐만 아니라 적정한 직접공사 원가를 보장 받을 수 있어 품질제고는 물론 부실시공 방지와 임금체불 등 사회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또한 건설업 구조를 수직·종속적 구조에서 수평·협력적 구조로 개선하여 그간 건설업계에 뿌리깊은 불법, 불공정한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종합/전문간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을 통해 건전한 건설업 발전에 기여할 것임.
 - 다만, 주계약자 직접시공 의무에 대해서는 시장 충격 완화와 수용성을 감안 단계적 적용 (직접시공 비율 : '17년 7월부터 30%, '18년 60%, '19년부터 직접시공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현장에서 목적물의 품질과 공사중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능력있고 경험있는 근로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이 필요함.
- 시중노임단가는 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일한 노임기준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통계법)
 - 연 2회 전국 건설현장(2,000개 현장)의 근로자 지급 임금 등을 통해 산출한 전국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임금(대한건설협회 주관 조사)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장에 근무하는 6,31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17%가 시중노임단가 미만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근로자 노무비 실태조사('16.3.~4월) >

- ◆ 조사대상 : 87개 공사현장 6,316명, 근로자의 ' 15년 지급 임금
 - 일반토목 45개소, 일반건축 18개소, 지하철 16개소, 주택 8개소
- ◆ 대상직종 : 대한건설협회 관리 건설근로 18개 직종
- ◆ 조사내용 : 실제 지급된 노무비 및 지급 방법, 근로자 연령 등

- 따라서,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면 공사 품질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사기를 높여 건설공사의 고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서는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시공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와 달리 주계약자의 경우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서 주계약자는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견 주계약자에게 계약 이행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하도급을 할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이는 부계약자와 달리 주계약자에게는 일률적으로 직접 시공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주계약자가 직접 시공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수급인이 직접 일을 완성하기로 하는 특약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 점(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82545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주계약자 직접 시공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공공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계약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노임 기준에 해당함.
- 또한 공사계약을 낙찰받은 계약상대방이 최저가를 제시하는 하도급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업자는 수주가격에 비례하여 노무비를 감축하고자 비숙련공을 고용하거나 업무강도를 높여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현재 공사 수주·시공 구조 하에서, 공공발주 건설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노임을 지급하는 것은 노무품질 감소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안전사고 위험 방지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따라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노임을 지급하도록 하더라도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에 해당하여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입찰공고를 통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노임지급의무가 있음을 알고 고서 입찰 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우리시 발주 공사가 아닌 타기관 또는 민간 발주 공사 등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인 우리시가 우

월적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또한 계약상대방이 근로계약상 임금결정 등의 자유를 다소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경영상 불이익에 비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계약목적 달성 및 공익적 견지에서 보다 중대한 경우, 이와 같은 조건 설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우리시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시중노임단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하더라도,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도입 필요성과 계약상대방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할 때 기준의 적정성이 입증되고, 입찰공고시 고용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현장설명시에도 이를 강조하는 등 입찰참가자가 위 조건에 대한 자기구속 의사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이라 보기 어려움.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비용·편익 분석

-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실태 조사결과 시중노무비 이하로 지급받는 근로자가 17%로 이에 대해 시중노임단가로 지급할 경우 공사비 증가효과는 0.3%에 불과하고, 제도개선으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직접시공함으로써 하도급 받아 시공할때에 비해 하도급 차액만큼 공사비 증액효과가 있으므로 별도 보전조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시에서 낙찰차액을 보존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현행 입찰제도의 법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나.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주계약자 공동도급 직접시공 및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를 통해 공사품질을 담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주계약자 공동도급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면 기술과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는 자동 퇴출되어 건전한 건설환경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입찰에 참가할 업체가 입찰공고를 통해 직접시공 및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노임지급의무가 있음을 알고서 입찰 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우리시 발주 공사가 아닌 타기관 또는 민간 발주 공사 등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업활동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근로계약상 임금결정 등의 자유를 다소 제한한다 하더라도, 경영상 불이익에 비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계약목적 달성 및 공익적 견지에서 보다 중대한 경우, 이와 같은 조건 설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임.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2항라에서는“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건설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화는 「지방계약법」 등에 저촉되지 않고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공익적 목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제29조(공동계약) 및 행정자치부 예규(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시 전체에 대한 확산과 실행 관리를 위한 추진 조직 신설 검토중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1부.

서울특별시 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① 주계약자 공동도급시 주계약자는 해당 공종에 대해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또한,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한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2조제10항~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⑨ (현행과 같음)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0항의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0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가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위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일반조건 제12절 1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예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0조의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주계약자는 시장충격 완화와 수용성을 감안 '17년 7월부터 30% 이상, '18년은 60% 이상, '19년부터는 100% 시공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2133-8568)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3708-2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33호**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개최 목적
 -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의견 수렴
2. 일시/장소 : 2017. 2.23(목) 19시 / 가리봉교회 (가리봉동 우마2길 34)
3. 내 용
 - 가리봉 도시재생의 비전 및 로드맵
 -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사업구상(안)
 -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등
4. 기타 사항
 -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실 주민께서는 공청회에 참석하시거나 공청회 개최일까지 서울시청 주거재생과 방문(신청사11층), 이메일(phy3794@seoul.go.kr) 및 팩스(02-2133-0747)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재생과(☎02-2133-7177), 구로구청 도시재생과(☎02-860-3298) 및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02-830-785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34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경비실회수 반송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박지영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일시 : 2016-11-28 14:35 장소 : 강변북로 (독도아리수정수센터 방면) 내용 : 경기07고6926(크레인)차량 축하중 5.0톤 초과	과태료 15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2. 28.

나.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36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제117조제1항,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소		
김철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일시 : 2016-09-29 06:59 장소 : 마장2교 내용 : 총복84사7309(카고)차량 총중량 4.0톤 초과	처분일 : 2016. 10. 25. 과태료 : 50만원 최초납기일 : 2016. 12. 31. 독촉일 : 2017. 1. 13.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2. 28.**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관허사업,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21, 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45호****제8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공고**

단독(다세대)주택 보존 및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특성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 소규모 정비를 통해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8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자격: 대학생 및 대학원생(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분 야	공동 응모	비고
마을만들기	5인 이내	응모자 1인(팀)이 2점 이내 작품 응모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	3인 이내	

2. 공모분야: 대상지 1개소 선택 후 공모 기본방향 및 기준에 적합한 계획(안) 제시

분 야		공모 대상지 기준
마을만들기	자유공모(기존)	▶ 서울시 내 소재지로 5만㎡ 내외의 아래지역 -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예정)구역 -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 -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대상지 제외 - [참고1] 도시재생활성화·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중인 구역 - 정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타 사업이 결정된 구역 - [참고2] 중복 출품율이 높은 8개 지역 - 단,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응모 가능
	지정공모(신설)	▶ [참고3] 시·자치구 협의를 통해 지정된 대상지 6개소 ※ 구역계 조정 가능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유공모(신설)	▶ 서울시 내 소재지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 - 「도정법 시행령」 제1조의2 (가로구역의 범위 등) ▶ 단,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응모 가능
	지정공모(신설)	▶ [참고4] 시·자치구 협의를 통해 지정된 대상지 9개소

3. 공모 기본방향

- 다양한 사업방식(모델)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발굴
- 마을만들기 예비전문가 발굴·육성

4. 필수 반영 사항

분 야	내 용
마을만들기	전면철거 후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개발로 마을공동체가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기존 단독(다세대) 주택 등 저층주거지에 대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 및 아이디어를 발굴 등을 위한 공모이며, 주거환경관리사업(정비계획) 등을 통한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형성강화를 위한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계획(안)을 작성하기 바람

분 야	내 용
	① 공모 시 당해지역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 - 자체평가서에 공모 당해지역 주민 면담일시, 면담주민, 면담내용 등 포함 ② 자치구(당해지역)와 충실히 협의하여 그 결과를 반영 - 자체평가서에 자치구(당해지역) 관련부서 협의일시, 협의부서, 협의내용 등 포함 ③ 공모자가 왜 당해지역을 택했는가에 대한 설명(분석과 평가 포함) ④ 당해지역에 대한 미래상 설정(정책적·공간적 부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 및 구체적 수단 제시 ⑤ 물리적 환경개선 방안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경제적 재생방안 등 제시(중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지역커뮤니티 붕괴, 사업의 지연에 따른 갈등 발생 등 다양한 문제에 따른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공동주택으로 주거공간의 개선과 함께 공용 옥외공간, 주민커뮤니티시설 확보 등을 통해 주거공동체와의 조화를 고려한 공간설계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등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계획(안)을 작성하기 바람 ① 공모자가 왜 당해지역을 택했는가에 대한 설명(사업성 분석 제외) ② 기존 동네 특성에 맞춘 계획안 제시 (도로변 근린상가시설, 주거, 상가 등 현재 지역을 구성하는 기능 반영) ③ (선택사항)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법령 및 제도 개선 아이디어 등 제시) ④ 평면·입면, 건물배치, 조경, 층수(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스카이라인 등

5. 공모일정

- 사업설명회(예정) : 2017. 4.

※ 자세한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http://citybuild.seoul.go.kr>에 공지 예정

- 작품접수 : 2017. 8. 24(목) ~ 25.(금) (2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홈페이지에 공지
- 작품심사 및 당선작 선정(예정) : 2017. 9.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시상 및 전시(예정) : 2017. 10 ~ 11.

6. 공모 제출물

제출물	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사업
출품신청서 1부	[서식1] 2점 응모 시 작품별로 각각 제출	
공모안 설명서 1부	[서식2] 2점 응모 시 작품별로 각각 제출	
자체평가서 1부	[서식3] 필수 반영사항	[서식4] 필수 반영사항
작품설명서[서식5] (ppt 7부 출력 후 제출)	- 파워포인트 20매(A4) 내외 로 작성 - 필수 작성사항(위치도, 도시계획 내용, 대표지번, 구역면적, 현황사진) 5매 내외	- 파워포인트 10매(A4) 내외 로 작성 - 필수 작성사항(위치도, 도시계획 내용, 대표지번, 구역면적, 현황사진) 3매 내외

제출물	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사업
프레젠테이션 판넬 [서식6]	A0 size(841x1,189mm)1매, 5T폼보드 부착 (가로·세로 제한 없음, 사이즈규격 준수)	
CD제출 (usb제출 금지)	작품설명서(ppt파일 첨부, ppt를 pdf변환하여 첨부) 프레젠테이션 판넬 JPEG (300dpi 9933×14043 pixel 정도로 함)	
재(휴)학증명서 각1부	공모기간 중인 `17년 1학기의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참가자 전원)	

7. 제출방법

- 위 공모 제출물을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접수 등을 통하여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 프레젠테이션 판넬, 작품설명서에는 사업대상지 위치 및 작품명을 제외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학교명(학교마크), 일체의 실명 또는 표기를 금함(실격사항)
- 과도하게 개념적이거나 활용가치 대비 과도한 공급 비용이 예상되는 아이디어는 지양함
- 운송료는 응모자가 부담
- 포장은 작품별 개별 포장하여 제출하되 우편물(등기)의 경우 응모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인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보내실 곳)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서울시청 주거환경개선과(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4층)

8. 시상 및 심사(총 15점, 시상금 41백만원)

구 분	마을만들기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위액	계(점)	총 금액	단위액	계(점)	총 금액
소 계		9	3,200만원		6	900만원
최우수상	1,000만원	1	1,000만원	300만원	1	300만원
우수상	500만원	2	1,000만원	150만원	2	300만원
장려상	200만원	6	1,200만원	100만원	3	300만원

※ 시상 및 심사 유의사항

- 추진상황에 따라 시상 조정(심사결과에 따라 수상 해당자가 없을 수 있음)
- 작품 심사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회로 구성하여 별도 추진

- 심사에 출품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인 작품(표절 등)이 아니거나, 외국사례 복사 제출 또는 다른 공모전에 출품한 동일·유사한 작품은 심사제외 및 수상 취소

9. 일반 유의사항

- 수상작의 출판권과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 반환기한(추후 통보)내 반환하지 않는 작품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됩니다.
- 주관기관인 서울시는 출품물의 반환기간 내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지사항 및 공모요강, 참고자료(마을공모전 길라잡이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으니 응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itybuild.seoul.go.kr>)
 - ※ 역대 출품작 및 수상작 열람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Tel 02-2133-7245, Fax 02-2133-0753)

[참고1]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및 주거환경관리구역(마을만들기 자유공모 대상지제외)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 일반형) ※ 세부위치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참고

연번	위 치		면적(㎡)	특 성
1	창신송인	종로구 창신1·2·3동, 송인1동	830,000	뉴타운 해제, 봉재산업 밀집지역
2	가리봉	구로구 가리봉동	330,000	뉴타운 해제, 국가산업단지 인접지역
3	해방촌	용산구 용산2가동	330,000	남산고도지구 내 구릉지형 주거지역
4	성수동	성동구 성수1가 1·2동, 2가 1·3동	890,000	토착산업, 노후주택 혼재지
5	신촌동	서대문구 신촌동	410,000	대학-지역사회 연계지역
6	암사동	강동구 암사1동	635,000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역사자원 인근 주거지역
7	장위	성북구 장위1동	320,000	재촉지구 내 뉴타운 해제지역
8	상도4동	동작구 상도4동	750,000	전형적 골목길 저층주거지

■ 주거환경관리구역

※ 고시 총25개 구역('17. 1. 1.기준)

연번	위 치	면적(㎡)	특 성	추진현황
1	마포구 연남동 239-1	82,900	2종일반/재건축해제지역('10.2.25)	완료
2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	43,560	2,3종일반/재건축해제지역('10.11.25)	완료('13.12)
3	동작구 흑석동 186-19	26,841	1종일반/준치지역	완료('13.12)
4	금천구 시흥동 957	49,282	2종일반/준치지역	완료('14.2)
5	성북구 길음동 1170	26,566	3종일반/준치지역	완료('13.11)
6	도봉구 방학동 396-1	25,229	1,2종일반	완료('14.6)
7	구로구 온수동 67	59,472	2종일반	완료('14.12)
8	성북구 삼선동1가 300(장수마을)	18,428	1종일반/재개발 해제지역 ('13.5.2)	완료('13.2)
9	구로구 구로동 111	30,996	2,3종일반/재건축해제지역('11.9.1)	완료('14.5)
10	도봉구 도봉동 280	42,365	1종일반/도봉산관광지	완료('14.12)
11	금천구 시흥동 950	96,870	2종일반/준치지역	완료('14.12)
12	은평구 신사동 237(산새)	45,756	1,2종일반	완료('15.6)
13	구로구 개봉동 271	32,958	1,2종일반	완료('15.10)
14	영등포구 대림2동 1027	42,959	2종일반/중국동포 밀집지역	완료('15.12)
15	은평구 응암동 30(산골)	13,896	2,3종일반	완료('16.12)
16	성북구 정릉동 372	35,150	2종일반/부흥주택 등 밀집지역	설계/공사중
17	동대문구 휘경동 286	39,396	1종일반	설계/공사중
18	동작구 상도동 259-40	47,580	1,2종(7층)일반	설계/공사중
19	성북구 정릉동 716-8	33,443.6	1종일반/재건축해제지역('13.1.31)	설계/공사중
20	강북구 미아동 776-68	22,080	2종일반/재건축해제지역(13.10.31)	설계/공사중
21	성북구 상월곡동 24	35,997	1,2종일반	설계/공사중
22	관악구 신림동 306	42,715	1,2종일반/신림4재정비촉진지역해제('16.6.23)	설계/공사중
23	영등포구 도림동 152-76	70,519	2(7층),2종일반	설계/공사중
24	영등포구 대림1동 877-22	50,336	1,2(7층),2종일반	설계/공사중
25	은평구 불광동 23	49,619	1,2종(7층)일반	설계/공사중

[참고2] 중복 출품율이 높은 8개 지역(마을만들기 자유공모전 대상지 제외)

연번	공모전 대상지			출품번호	비고
	자치구	동 수준	세부 위치		
1	성북구	성북동	300번지	제1회(9,30,44,61,81)	휴먼타운 시범사업(선유골) 제1회(동상), 3회 이상 출품
2			224번지(성북2주택재개발)	제2회(31), 제5회(32), 제7회(45)	제5회(동상), 3회 이상 출품
3		삼선동	11-53번지(삼선동1가)	제4회(73)	제4회(은상) / 사업연계
4			삼선4구역	제1회(25,62,83) 제3회(55)	사업연계 / 3회 이상 출품
5	서대문구	홍제동	280-2번지(홍제3동)	제5회(61)	제5회(대상) / 사업연계
6		대신동	124번지(봉원사길19)	제7회(30)	제7회(장려상) / 사업연계
7	구로구	개봉3동	6, 7, 21통	제3회(12)	제3회(대상) / 사업연계
8	관악구	중앙동	886번지	제7회(41)	제7회(장려상) / 사업연계

[참고3] 마을만들기 지정대상지(6개소) ※ 자세한 구역계는 홈페이지 참조 / 구역계 조정 가능

연번	공모전 대상지			면적(㎡)	비고
	자치구	동 수준	세부 위치		
1	관악구	난향동	675번지 일대	46,176	난향1재건축정비예정구역해제(‘14. 3.13.)
2	성북구	성북동	29-51번지 일대	30,492	재개발정비구역 해제(‘15. 1. 2.)
3	은평구	신사동	303-2번지 일대	60,694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15.10. 8.)
4	은평구	구산동	177번지 일대	32,494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 예정(‘17. 2.)
5	서대문구	북가좌동	322-1번지 일대	85,000	북가좌제4주택재건축사업 해제(‘15.10. 8.)
6	양천구	목2동	232번지 일대	64,000	2016년 희망지사업 추진지역

[참고4]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대상지(9개소)

※ 자세한 구역계는 홈페이지 참조

연번	공모전 대상지			면적(㎡)	비고
	자치구	동 수준	세부 위치		
1	서초구	서초동	1451-67번지 일대	2,847	2종일반주거지역
2	강동구	천호동	321-18번지 일대	2,703	2종일반(7층 이하)주거지역
3	서초구	서초동	1611-1,12번지 일대	2,302	2종일반(7층 이하)주거지역
4	중랑구	중화동	1-1번지 일대	7,403.76	2종일반(7층 이하)주거지역
5	서초구	방배동	911-3번지 일대	1,597	2종일반주거지역
6	구로구	구로동	685-280번지 일대	3,076	준공업지역
7	금천구	독산동	234-72번지 일대	2,679	2종일반(7층 이하)주거지역
8	강동구	상일동	152번지 일대	5,224.1	2종일반주거지역
9	강남구	논현동	150-4번지 일대	1,921.5	2종일반주거지역

[서식1] 출품신청서

제8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출품 신청서

작품명		○△□○△□ ○△□ ○△□		
대상지역 현황	위 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번지 일대 (○○,○○○㎡)		
	지역, 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 사항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구역명], 재정비촉진지구 및 기타 정비(예정)구역 [구역명]		
참여자	성 명	학 교 (학과명)	주 소	전화번호
대표참여자	홍길동	○○대 (○○학과)	(주소) : (e-mail 주소) :	
공동				
공동				
공동				
공동				

제8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전에 위와 같이 응모 신청합니다.

2017. 8. .

대표 참여자 성명 : (인)

- 첨부물 : 1. [서식2]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안 설명서 1부.
 2. [서식3, 4] 자체평가서 1부.
 3. [서식5] 작품설명서 7부.
 4. [서식6] 프리젠테이션 판넬.
 5. CD 1부(작품설명서 ppt, pdf 및 판넬 파일 포함) * usb 제출 금지
 6. 재학(휴학)증명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2]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안 설명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안 설명)

[서식3] 마을만들기 자체평가서 ※ 추가작성 가능

작품명 :

필수 반영 사항	반영 및 조사내용	비고
공모시 당해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갖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 (면담일시, 면담주민, 면담내용 등)		
자치구(당해지역)와 충실히 협의하여 그 결과를 반영 (협의일시, 협의부서, 협의내용 등)		
왜 당해지역을 택했는가에 대한 설명(분석과 평가 포함)		
당해지역에 대한 미래상 설정 (정책적·공간적 부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 및 구체적인 수단 제시		
물리적 환경개선 방안과 사회적·경제적 재생방안 등을 함께 제시 (중요)		

제8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자체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7. . .

응모자 성명 : (인)

※ 참여자 전원 서명

서울특별시 장 귀하

[서식4]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체평가서 ※ 추가작성 가능

작품명 :

필수 반영 사항	반영 및 조사내용	비고
왜 당해지역을 택했는 가에 대한 설명 (사업성 분석 제외)		
기존 동네 특성에 맞 춘 계획안 제시 (도로변 근린상가시설, 주거, 상가 등 현재 지역 을 구성하는 기능 반영)		
(선택사항)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법령 및 제도 개선 아이 디어 등 제시)		
평면·입면, 건물배 치, 조경, 층수(용도 지역), 건폐율, 용적 률, 스카이라인 등 <u>판넬 및 작품설명 서에 반영 여부 확 인</u>	• 평면·입면을 반영하였는가? 예 () 아니오 () • 건물배치를 반영하였는가? 예 () 아니오 () • 조경을 반영하였는가? 예 () 아니오 () • 층수(용도지역에 맞는) 반영하였는가? 예 () 아니오 () • 건폐율을 반영하였는가? 예 () 아니오 () • 용적률을 반영하였는가? 예 () 아니오 () • 스카이라인을 반영하였는가? 예 () 아니오 ()	

제8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자체평가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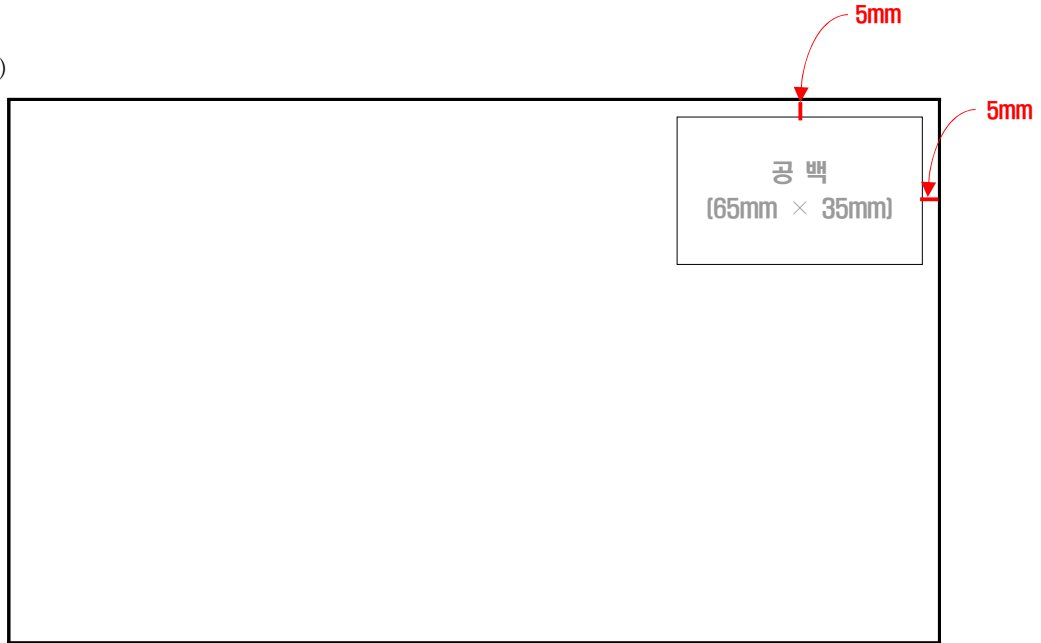
응모자 성명 : (인)

※ 참여자 전원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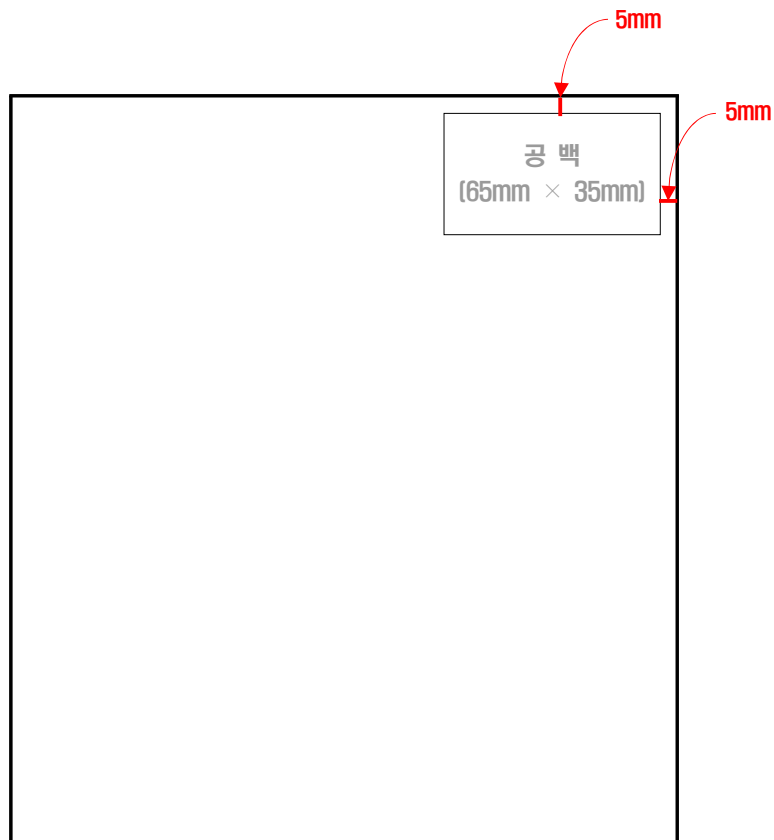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5] 작품설명서 7부 ※ A4규격, 가로세로 제한 없음, 학교명, 일체의 실명 또는 표기 등을 금함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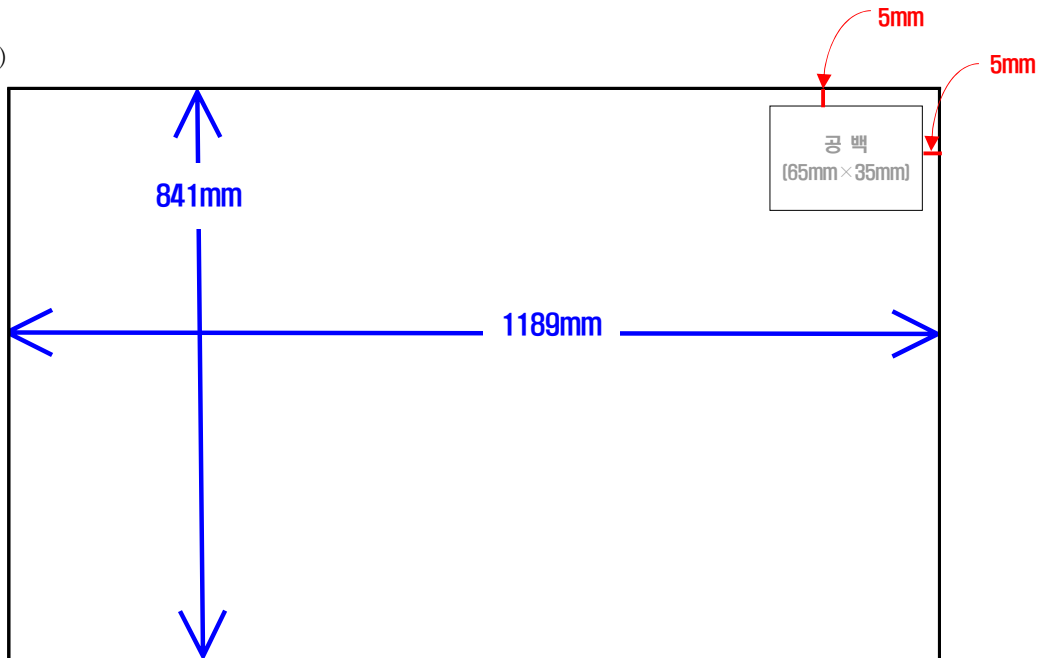


(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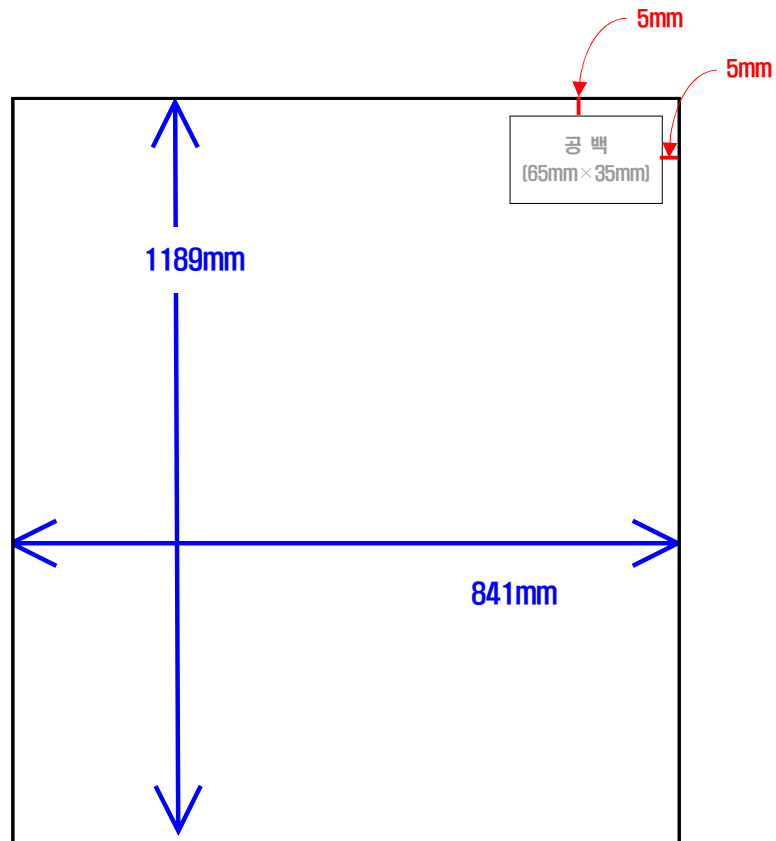


[서식6] 프레젠테이션 판넬 ※ A0규격, 가로세로 제한 없음, 학교명, 일체의 실명 또는 표기 등을 금함

(가로)



(세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53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장

구 분	연번	부의 안건명	주관 부서
조례안 (14건)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산관리과
	2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세제과
	3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교통운영과
	4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도환경개선과
	5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공원녹지사업소(환경보전과)
	6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물재생계획과
	7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천관리과
	8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담당관
	9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디자인정책과
	1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생정책과
	1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활성화과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과
	1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빛정책과
	1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정책과

구 분	연번	부의 안전명	주관 부서
동의안 (10건)	1	서울특별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산관리과
	2	서울특별시 시립중장기청소년쉼터(은평)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담당관
	3	서울특별시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담당관
	4	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중량물재생센터 (관리과)
	5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영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예술과
	6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혁신담당관
	7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시설관리 사무의 대행 동의안	사회혁신담당관
	8	서울특별시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박물관과
	9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조경과
	10	서울특별시 창동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정책과
의견 청취안 (3건)	1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과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시설계획과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시설계획과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7-14호

토지의 형질변경 사고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 토지의 형질변경 “사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종 로 구 청 장

1. 고시취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2(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재대상)에 따라 사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방법에 따라 해제되기 전까지 지정·관리 하고자 함.

2. 고시내용 : 토지의 형질변경 사고지 조서

구 분	도면표 시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면적(㎡)	비고(기재 내용)
불 법 형상변경	1	평창동	408-11	대	365	토지의형질변경 사고지(불법 형상변경-세부사항도시개발과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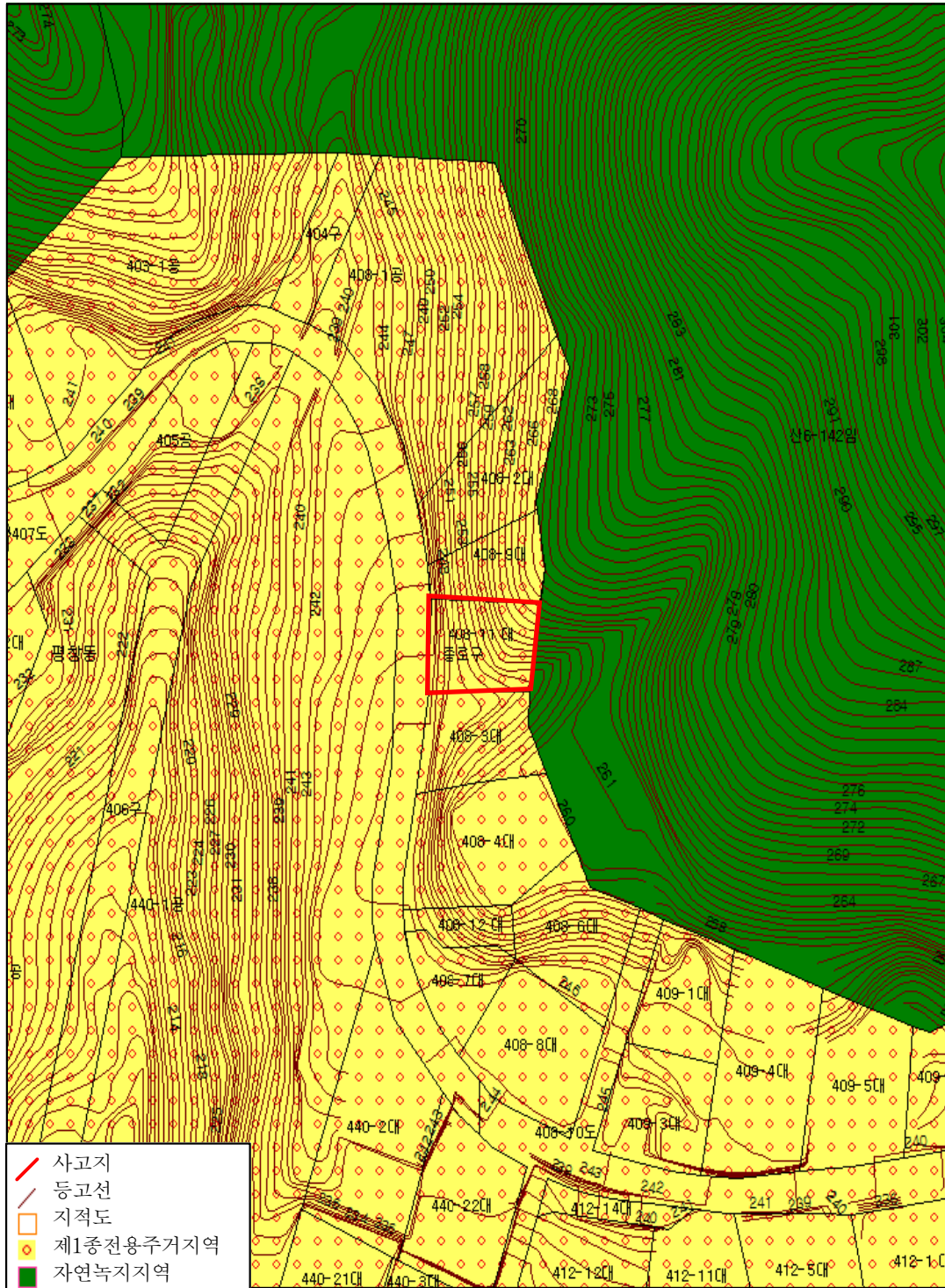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도시개발과(☎2148-2661)와 토지정보과(☎2148-2925)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사고지 지형도면
(종로구 평창동 408-11번지) (S=1:1,000)



◆ 구로구고시 제2017-13호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806호(2010.11.15, 서울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036호(2014.04.21,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49호(2016.12.12,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2차) 변경 승인)로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17-3호(2017.01.05)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열람공고한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 항동 58-1 외 28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
- 사업의 명칭 :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

다. 사업의 면적 : 13,447㎡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로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마. 사업 착수,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변경 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사용,수용 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참조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02-860-28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의 시행자 : 구로구청장

○ 사업의 명칭 :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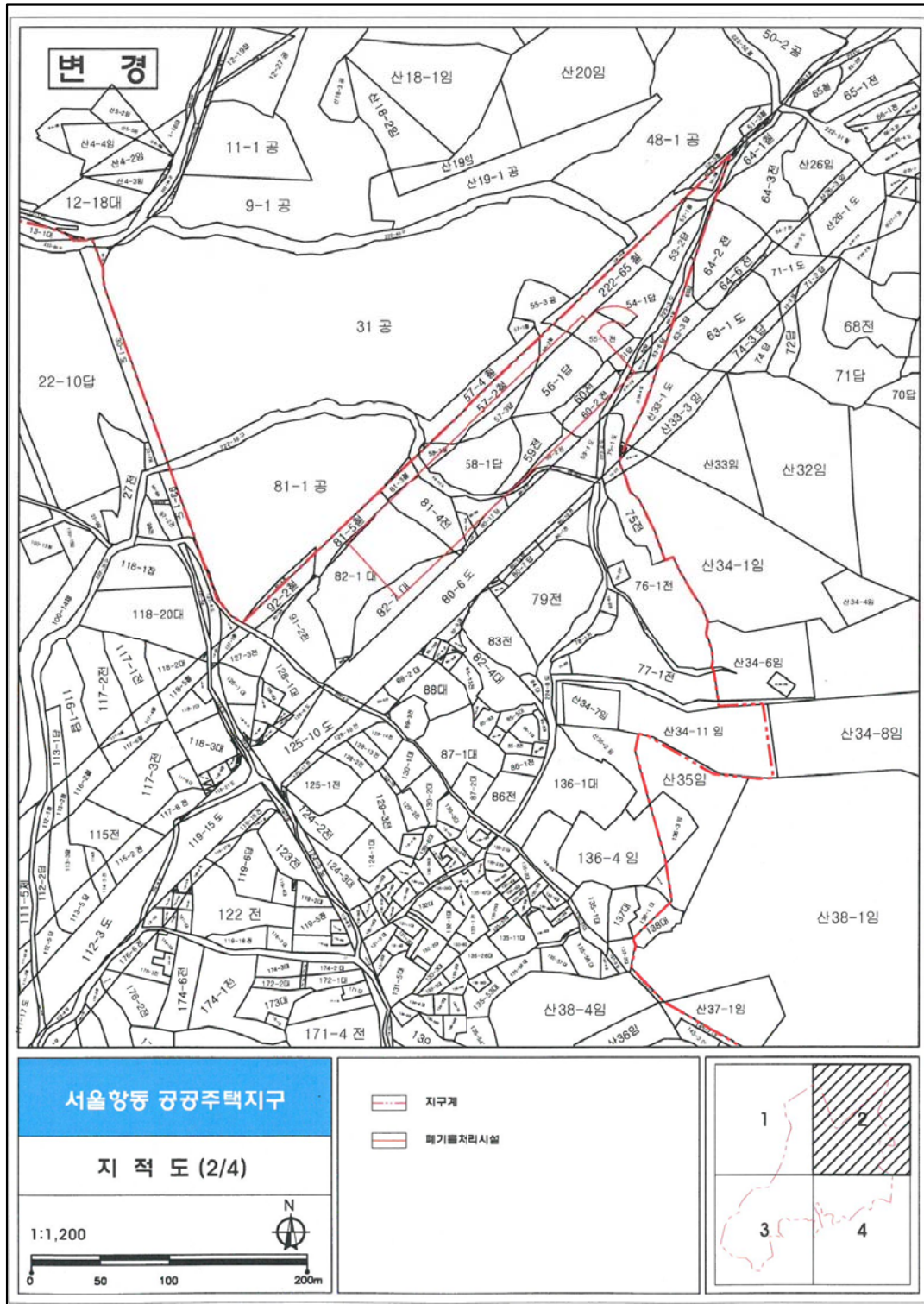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항동 222-62	구	539	373	국토교통부					
2	항동 222-65	철	1,909	67	국토교통부					
3	항동 223-3	도	772	72	국토교통부					
4	항동 54-1	답	1,494	240.4	에스에이치공사					신규편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	항동 55-1	전	813	513.6	에스에이치공사					증133.6㎡
6	항동 56-1	답	1,881	1,881	에스에이치공사					
7	항동 56-2	철	338	141	국토교통부 외 1인					
8	항동 57-2	철	1,358	355	국토교통부					
9	항동 57-3	답	575	575	에스에이치공사 외 4인					
10	항동 58-1	답	2,145	2,145	에스에이치공사					
11	항동 58-2	철	270	95	국토교통부					
12	항동 59-2	전	431	139	서울특별시					
13	항동 59	전	1,103	1,103	에스에이치공사 외 2인					
14	항동 60-2	전	753	546	서울특별시					
15	항동 60	전	470	470	에스에이치공사					
16	항동 61-1	답	14	14	서울특별시					
17	항동 61	답	264	109	에스에이치공사					
18	항동 62-1	답	128	7	서울특별시					
19	항동 80-11	답	238	3	서울특별시					
20	항동 80-2	답	423	414	에스에이치공사 외 2인					
21	항동 80-3	전	162	125	에스에이치공사 외 2인					
22	항동 80-5	전	179	1	서울특별시					
23	항동 81-3	철	265	5	국토교통부					
24	항동 81-4	전	1,467	1,397	에스에이치공사					
25	항동 81-5	철	745	1	국토교통부					
26	항동 82-1	대	4,435	2,238	에스에이치공사 외 2인					
27	항동 82-2	철	83	35	국토교통부					
28	항동 82-7	대	1,731	373	에스에이치공사 외 2인					
29	항동 산33-2	임	166	9	서울특별시					
계			23,657	13,447						

위치도 및 현장 사진



폐기물처리시설 지적도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17-74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내무부 고시 제413호(1958.2.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7호(2016.1.14.)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된 용마도시자연공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저촉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광진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76-119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 : 4,052m²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따로 붙임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450-777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1	광진구 중곡동 176-119	임야	3,858	3,858	임야 공원	학교법인 일송학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94-195				
2	광진구 중곡동 176-109	임야	194	194	임야	이정석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716-10				

◆ 구로구공고 제2017-16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82호(1973.11.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구로구공고 제2016-344호(2016.03.10)로 사업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하여 구로구고시 제2016-58호(2016.4.21)로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한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860-3127)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512~685-20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 1) 전 체 : 도로개설 폭10m, 연장85m
- 2) 금 회 : 도로개설 면적11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구로동 685-512~685-201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분할예정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구로동 685-452	대	188	4.5	김관태	구로구 구로동 685-70 현대연예인아파트 203-1301			188분의172	
	변경	“	“	183	106	“	“			183분의167.5	
2	당초	“	“	188	0.5	박원희	구로구 구로동 685-500			188분의16	
	변경	“	“	183	10	박진흙	“			183분의15.5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구로구공고 제2017-1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시고시 제2000-319호(2000.11.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구로구고시 제 2015-62호(2015.4.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고시한 『신도림동 432-3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변경 및 토지조서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860-3127)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427-3 ~ 427-1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신도림동 432-3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 도로개설 폭10m, 연장4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 성 명 ㄱ(당초)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ㄴ(변경) : (주)유당

· 주 소 ㄱ(당초)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ㄴ(변경)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 1258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토 지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주)유당

○ 사 업 의 명 칭 : 신도림동 432-3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분할예정지번)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당초	신도림동 427-16	대	93	70	주식회사 리더스타 코리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강로3가)	주식회사신 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	신도림동 427-55
	변경	신도림동 427-55	대	70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강경식 (리더스타 코리아)	경기도 과천시 뚝골로80-2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강로3가)]	"	신도림동 427-16
2	당초	신도림동 427-17	대	28	28	주식회사 리더스타 코리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강로3가)	주식회사신 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	
	변경	"	"	"	"	"	"	-	-	-	
3	당초	신도림동 427-11	대	112	66	주식회사 리더스타 코리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강로3가)	주식회사신 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	신도림동 427-54
	변경	신도림동 427-54	"	66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강경식 (리더스타 코리아)	경기도 과천시 뚝골로80-2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강로3가)]	"	신도림동 427-11
4	당초	신도림동 427-10	대	62	62	정인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 9-505	농협동 우성아파트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구로지점)	근저당	
	변경	"	"	"	"	구로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45	-	-	-	
5	당초	신도림동 427-36	도	59	59	국 (기획재정부)					
	변경	"	"	"	"	"					
6	당초	신도림동 427-3	대	141	109	주식회사 리더스타 코리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강로3가)	주식회사신 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	신도림동 427-52
	변경	신도림동 427-52	"	109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강경식 (리더스타 코리아)	경기도 과천시 뚝골로80-2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강로3가)]	"	신도림동 427-3
7	당초	신도림동 427-2	대	96	6	주식회사 리더스타 코리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강로3가)	주식회사신 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근저당	신도림동 427-50
	변경	신도림동 427-50	"	6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강경식 (리더스타 코리아)	경기도 과천시 뚝골로80-2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강로3가)]	"	신도림동 427-2
8	당초	신도림동 427-34	도	7	1	국 (기획재정부)					신도림동 427-56
	변경	신도림동 427-50	"	1	"	"					신도림동 42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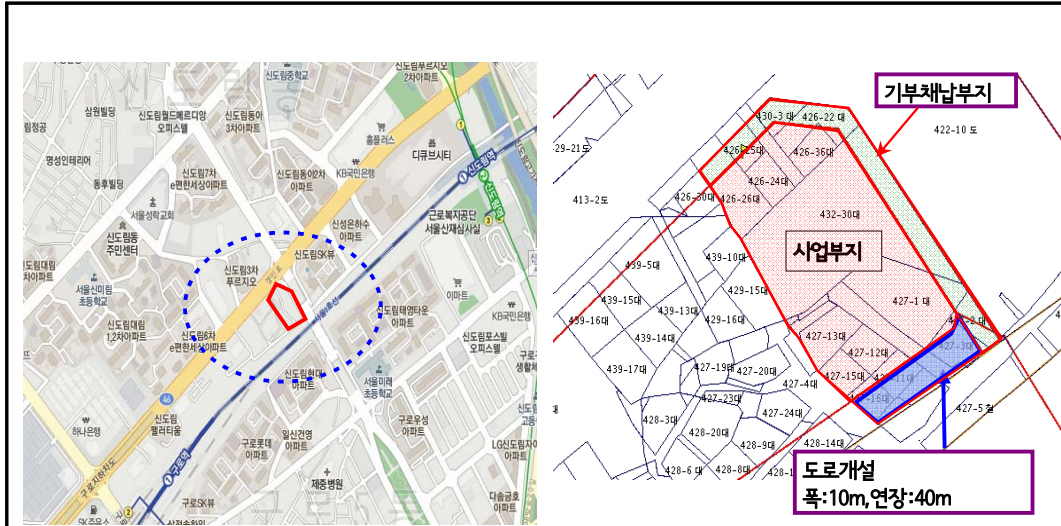
물 건 조 서(변경)

○ 사 업 시 행 자 : (주)유당

○ 사 업 의 명 칭 : 신도림동 432-3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신도림동 427-10	건물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58	근린생활 시설	정인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 9-505						
			〃	〃	〃								
		건물 (1층)	철근콘크리트조	54	근린생활 시설								
			〃	〃	〃								
		건물 (2층)	연와조	54	근린생활 시설 (사무소)								
			〃	〃	〃								
	건물 (3층)	연와조	54	근린생활 시설 (사무소)									
		〃	〃	〃									
	〃	건물 (옥탑)	철근콘크리트조	13		주택	구로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45	
			〃	〃		〃							
		옥탑 샷시	판넬	15									
			〃	〃		〃							
		지층 환기구	철근콘크리트조	1	환기구								
			〃	〃	〃								

 위치도 및 현황사진(신도림동 432-30번지 주변)



◆ 영등포구공고 제2017-1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고시 제561호('85.12.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고시 제19호('86.01.16)로 지적고시된 『도림로 확장공사』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2월 2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신길동 421-30~432-1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사업의 명칭 : 도림로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30→35m, 연장 70m(편측)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5년

바. 열람공고기간 :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아.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영등포구청 도로과에 관계서류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의견 있으실 때에는 열람공고기간 내 영등포구청 도로과(☎ 2670-3813)로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사업의 명칭 : 도로표 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신길동 421-30	답	19	19	연제혁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40-21 301호				
					연제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066 후곡마을 406-603				
2	신길동 421-28	대	100	100	송재석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42 당산삼성래미안 416-1302				
3	신길동 419-41	대	11	11	민만식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19-20				
4	신길동 419-42	대	14	14	정귀화	서울시 중구 남학동 16-1				
5	신길동 419-36	대	75	75	이인석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571(고강동)				
6	신길동 432-10	답	68	68	빈대길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669	근저당권	신길 새마을 금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728	
							지상권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사업의 명칭 : 도립로 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1	신길동 421-17	지1층 (점포)	철근콘크리트조, 연외조	76	송재석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42 당산삼성래미안 416-1302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21-17	
		1층 (점포)		98							
		2층 (점포)		98					송만석 외 1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21-17	
		3층 (주택)		65					오금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21-17	
2	신길동 419-20	1층 (점포)	연외조	3	민만식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19-20					
		테라스		4							
		출입구		7							
		수도 계량기		2식							
3	신길동 432-1	가건물		65	조완형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32-1, 2호					

영 업 권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사업의 명칭 : 도로로 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상호명	업종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 종류및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신길동 421-17	영업권	보탑식당	일반음식점	오금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21-17				
		영업권	영주종합물류	도소매 (창소용품 및 철물)	문재희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21-17				
2	신길동 419-20	영업권	영주종합물류	도매 소매 (창소용품)	문재희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19-20				
3	신길동 432-10	영업권	JK상사	도소매 (타일, 도기 등)	조원행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32-1, 2호				

□ 위치도



◆ 영등포구공고 제2017-1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건고시 제768호('64.01.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영고시 제2016-79호('16.09.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서고시 제2016-97호('16.11.03)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림동 286-11~187-39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변경사항(소유자명 및 물건추가)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2월 2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림동 187-17 ~ 200-2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6-11 ~ 187-39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6m, 연장 11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1) 성 명 : 영등포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마.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변경없음)

바. 열람공고기간 :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아. 영등포구청 도로과에 관계서류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의견 있으실 때에는 열람공고기간 내 영등포구청 도로과(☎ 2670-3813)로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7-11 ~ 187-37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구분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도림동 187-17	당초	대	7	7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변경					변 경 없 음				
2	도림동 187-108	당초	대	3	3	박순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85-6				
		변경					변 경 없 음				
3	도림동 187-109	당초	대	46	46	박영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7-19	근저당권	도림2동 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63	
		변경	대	46	46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4	도림동 187-110	당초	대	2	2	나문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6-25				
		변경	대	2	2	성명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81-10				
5	도림동 187-107	당초	대	47	47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변경					변 경 없 음				

연번	소재지	구분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6	도림동 187-66	당초	대	43	43	조청자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26, 203동 306호 (가좌동, 가좌주공아파트)				
		변경	대	43	43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7	도림동 200-29	당초	대	60	60	정형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50-5 한신아파트2차 201-1202				
		변경	대	60	60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8	도림동 200-30	당초	대	19	19	손춘식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35-8	압류	국 (기획재정부)		
		변경	대	19	19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9	도림동 200-34	당초	대	87	87	김원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				
		변경				변경 없음					
10	도림동 200-36	물건추가	대	91	91	이선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탈동 536 탑마을 114-503				
						이승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60 105동 204호				
						이석희	경기도 광명시 하인동 702 고층주공아파트 507-906				
						이성호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 108동 1602호				

별첨 조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7-11 ~ 187-37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관리종류및내용			비고
						당초	주소	주 소	관리종류	성 명	주 소	
1	도림동 187-19	당초	주택 (1층)	목조	55	박영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11길 8-16(도림동)		근저당권	도림2동새 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2동 156-4	
			당초		2식							
			변경		1식							
		변경	주택 (1층)	목조	55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변경		2식							
			보일러실		1식							
2	도림동 187-66	당초	주택 (1층)	목조	72	조청자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26, 203동 306호(가좌동, 가좌주공아파트)					
			대문		1식							
		변경	주택 (1층)	목조	72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대문		1식							

연번	소재지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관리종류및내용			비고
						당초	주 소	관리종류	성 명	주 소	
3	도림동 200-2	당초	주택 (1층)	목조	85	박동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 1203동 1902호(논현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무허가
		변경					변 경 없 음				
4	도림동 200-3	당초	주택 (1층)	목조	13	황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01 관악현대아파트 118-304	가처분	손춘식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관율로 6, 3층	
		변경					변 경 없 음				
5	도림동 200-13	당초	주택 (1층)	목조 및 시멘트 블록조	22	김일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15				
		변경					변 경 없 음				
6	도림동 200-14	당초	주택 (1층)	목조 및 시멘트 블록조	42	정세운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33 103동 601호(방배동, 삼환나따르빌)				
			창고		1식						
			대문		1식						
		변경	주택 (1층)	목조 및 시멘트 블록조	42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창고		1식						
			대문		1식						

연번	소재지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명	주소	주 소	권리종류	성명	주 소	
7	도림동 200-15	당초	주택 (1층)	목조	62	서정민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807 쌍용아파트 112-2301					
			부여		1식							
			창고		1식							
		변경	대문		1식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주택 (1층)	목조	62							
8	도림동 200-16	당초	부여		1식	김원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					
			창고		1식							
			화장실		1식							
		변경	수목		1식							

변경 없음

연번	소재지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9	도림동 200-18	물건추가	주택 (1층)	목조	39	이호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119, 206동 1003호(백석동, 백송마을)				
10	도림동 200-20	물건추가	주택 (1층)	목조	59	김진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59 신공덕2차 삼성래미안 202-204	세입자	김종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20	무허가
								세입자	장선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20	
								세입자	이종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20	
			주택 (1층)	세멘조	23	이상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당동 105 시당우성아파트 205-305	세입자	최병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20	무허가
			대문		1식						

■ 위 치 도



◆ 동작구공고 제2017-9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동작구 노량진동 329-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동 작 구 청 장

1. 공 고 일 : 2017. 2. 2.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820-9596)
4. 도시관리계획(안)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71	노량진동 310-150	노량진동 310-46	일반 도로	-	1993.3.8 (서고제1993-60호)	-
변경	소로	3	3	6	국지 도로	61	노량진동 310-150	노량진동 329-3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	4	국지 도로	15	노량진동 329-3	노량진동 310-50	일반 도로	-	-	-

나. 입안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3	소로 3-3	◦ 연장, 종점 변경	◦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 종점 변경
-	소로 3-	◦ 도로 신설	◦ 인근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개설로 접근성 개선

5. 관련도서 : 열람장소 비치

6. 기 타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안)

S=1:1,000



도로 (신설, 변경) —
도로 (기정) —

구분	구도			기능	연장 (m)	기법	용법	사용 형태	주요 요약기	표준 표준	비고
	노선 구분	종류	도로 구분								
기법	도로	3	3	국가지도	71	노선(노선) 310-150	노선(노선) 310-46	일반도로	-	1952.3.8 [412호(제103) 도로법]	-
변경	도로	3	3	국가지도	61	노선(노선) 310-150	노선(노선) 320-3	일반도로	-	-	-
신설	도로	3	-	국지도	15	노선(노선) 320-3	노선(노선) 310-50	일반도로	-	-	-

위 치 도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 8척 (기선 2척, 부선 6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2.1. ~ 2017.2.28.	2017. 1.2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선박 35척 (기선 11척, 부선 24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2.1. ~ 2017.2.28.	2017. 1.26.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